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인쇄/1998년 12월 26일

발행/1998년 12월 29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북한인권정보센터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8 팩시밀리 901-2546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49-4

6,500원

연구보고서 98-05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 성 호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은 외국인의 대북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법·제도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적 환경은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며, 법규 해석·적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경제적·기술적인 환경이나 교통·통신 등 하부구조상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의 정비상태를 면밀하게 추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외자유치법령의 주요특징

가. 외자유치 형태의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북한은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를 장려하는 방침을 채택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외자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합영에 국한되어 있던 외국인투자 형태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합영 외에 합작, 외국인 단독투자의 3가지 형태로 확대하였다. 특히 북한이 외국투자가가 100% 단독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형태인 외국인기업을 새로이 허용한 것은 외자유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외자유치법령상의 세제나 토지이용의 면에 있어서 중국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10조 등을 참조). 우선 기업소득세율을 중국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고, 기업소득세의 감면사유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50년간의 토지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토지이용권의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 및 저당을 허용하고 있다(「외국인 투자법」 제15조, 「토지임대법」 제6조 및 제15조).

아울러 외자유치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의 대북 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 「통제된 開放」정책 추진

북한의 외자유치법령 제정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전환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방을 통한 경제난 타개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하지만 외자유치법령의 여러 곳에서는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개방의 바람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국한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북한 전역에서 합영과 합작을 허용하면서도 외국인 단독투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로 한정된 것은 북한체제에 미치는 개혁·개방의 여파를 극소화하는 가운데 이 지역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북한은 「토지임대법」에서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고 판매, 재임대, 증여 등을 허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토지(생산수단)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며 예외적으로 농지에 한해 협동적 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은 「생산수단 국유화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경제개방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2.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가. 국제경쟁력의 결여

북한당국이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필요한 외화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법령상 국제경쟁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체제유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아울러 작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조항들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경쟁국에 비해 투자환경이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합영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중요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출석 이사의 2/3 찬성으로 이사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신속성이 결

여되어 있다. 합작기업에 대한 투자상환과 이윤분배는 제품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합작기업의 경영은 북한측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다. 외국인기업에 있어서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출자평가액은 등록자본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합영·합작·단독투자 등의 구별없이 북한에서는 등록자본의 감자가 불가능하여 경영활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둘째, 외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노무관리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채용 및 해고에 있어서 인력알선기관과의 계약 내지 합의를 규정해 놓고 직업동맹조직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곤란한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을 기업이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채용시 당국과의 합의를 규정해 놓고 있고, 경쟁국보다는 월등히 높은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셋째, 외화관리와 금융업무와 관련해서는 북한원 계좌에는 공화국 영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북한원을 넣게 되어 있으나, 이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북한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이윤의 교환성 통화로의 태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종업원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임금 등 합법적 소득의 60%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은 북한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토지관리에 있어서도 중국의 법령과 비교하여 불리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할 경우 토지임대기관의 우선구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기, 통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비를 토지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토지임대료에 포함시킴으로써 토지임대료의 과다책정이 예상된다든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토지이용권의 반환시 투자한 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북한의 외자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다른 경쟁국에 비해 외자유치에 불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의 국외소득 모두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거주외국인이 북한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가 적용되도록 한 것 등은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되는 문제조항이라고 하겠다.

나. 법령의 일관성 및 명확성의 결여: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

전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들의 법령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이며,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는 구체성이 없고 불분명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대북투자의 대상업종과 관련하여 ‘~을 비롯한 여러 분야’라는 표현은 명확성·구체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예이다. 또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9조 5호)와 같이 기업설립 승인 불허 사유가 분명치 않아 남한기업과 외국투자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기업의 영업중지나 기업해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8조는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반행위의 엄중성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승인기관(대외

경제기관과 지대당국)에 달려 있어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토지임대법시행규정」 제86조 및 제92조에서는 토지의 기준 임대료와 사용료를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기준임대료와 사용료 책정기준이 분명치 않다.

이같은 불명료하고 구체성을 결여한 조항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소지가 높다. 이러한 조항들은 특히 남한기업이 나진·선봉지역에 100% 단독출자하는 경우 우리측에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 실효성 보장 불투명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 규정된 조항만을 가지고 북한의 투자환경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힘든 면이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조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우선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기인하고 있다.

합영기업의 노동력 우선보장 조항이나 합영기업의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합영기업의 종업원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과거의 합영경험이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외국투자가는 합법적 기업이윤이나 소득금, 그리고 청산자금은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외화관리법」상의 규정은 북한의 극심한 외화부족을 고려할 때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출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윤송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관, 기업소는 합영수출계획에 예견된 물자는 우선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북한의 심각한 물자불족현상을 고려할 때 필요물자의 적기조달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합영법」, 「합작법」 등에 제3국 기술자 및

기능공의 채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체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필요인력의 채용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영기업 종업원들의 해외출장을 북한당국은 제 때에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경영 비밀은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 협의없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법령조항도 얼마나 잘 지켜질 지도 미지수이다. 외자유치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조항들은 외국투자기업에 비해 남한기업을 차별대우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남북경협시 고려사항

가. 북한진출시 기업의 고려사항

(1) 기업설립 및 출자시 고려사항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 합영사업을 하려 할 경우 북한원료 원료, 자재의 출자는 기업이 조업한 후 한 회전분의 유통 및 생산에 쓸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바(「합영법 시행규정」 제32조), 한 회전분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외자유치법령에서는 현물재산이나 재산권으로 출자하는 경우 신제품 및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현물출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선진 자본재나 고급의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기업이 중고 설비를 북한에 이전하는 방식의 투자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은 해당

설비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현행 북한법하에서 출자하는 재산에 대한 신뢰성있는 가격평가제도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즉 현물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발명권이나 기술비결 등 무형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무형재산의 평가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한 출자재산 평가제도가 단시일내에 정착될지도 의문이다. 결국 출자재산의 가격평가는 대북투자에 나서는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운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출자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북한측 당사자 및 관련 당국자를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들은 출자재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 제3자에 평가를 위임하는 방안을 합작투자 계약에 명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경영 및 노무관리에 관한 점검사항

「합작법」은 이윤분배나 상환을 생산제품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투자자측이 그 판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점은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제품의 판로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측 당사자와 합작계약을 체결해야 투자로 인한 불측(不測)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합영기업의 생산제품 판매에 대하여 국가가 정해진 기관, 기업소에 북한원을 받고 팔 수 있으나, '판매대금은 노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북한화폐로 받은

판매대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수판매시에도 여러 가지 법·제도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서는 수출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정책도 미비한 형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은 내수시장 협소,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남한기업은 수출을 목표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산 제품의 미국, 유럽 등지로의 수출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측은 직접 또는 직업동맹조직을 내세워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출자기업의 노무관리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의 종업원들이 누리게 될 상대적 혜택들(물질적 인센티브 및 국가사업 미동원 등)이 북한 국내기업 노동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해 북한측이 대북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에 대해 간섭 및 통제를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만반의 대비책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예컨대 이사회 결의나 기업대표의 동의서 제출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의가 없이는 북한노동력을 임의로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합작투자 계약서에 꼼꼼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

(3) 외화 및 토지이용시 고려사항

남한기업은 「외화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기업운명을 통해 얻은 이윤과 기타소득을 세금없이 북한지역 밖으로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자본을 제한없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북한영역 안에서 취득한 북한화폐는 외화로 교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외화로 얻은 이윤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외송금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은 합법적 수입 및 자기 자본에 대한 북한원의 교환성 통화로의 태환을 보장받지 않으면 「외화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북한밖으로 송금하지 못함으로써 대북투자로 인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남한기업은 이윤의 송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당국이 토지임대료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료의 표준화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 기준의 설정 및 토지임대제도의 보완·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4) 보험가입 및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대비

전술한 바와 같이 본래 북한영역 내의 물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실정을 들여다 보면 물건의 성격에 따라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보험가입주체가 결정되고 있어 현재에도 남북한간에 제한적이지만 보험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조에서 ‘원칙적으로’ 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문구에 비추어 북한보험 이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러한 틈새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향후 북한에 진출하더라도 북한보험 이외에 남한이나 제3국의 공신력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한편 합영·합작 또는 단독투자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할 경우 남한기업의 발명특허나 기술·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특히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남한기업들이 합작투자계약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합작투자계약에서 우리 기업들은 한국기업의 특허·기술·상표 등이 최소한 북한의 현행제도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산업재산권의 보호가 남한에서 보호받는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점검

외자유치법령의 분쟁해결조항은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국의 중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의 경우 「외국인투자법」, 「합영법」과 달리 분쟁시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남북합작기업은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을 근거로 내세워 기업 설립당시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규정을 확인받도록 하거나 또는 남한단독으로 출자하는 기업이 북한기업과의 거래시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분쟁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제3국에서 중재가 실현된다고 해도 북한의 재판소가 주권면제를 주장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집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우리 기업은 계약서에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약속받는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이 삽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

(1)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의 체결

「외국인투자법」이 원칙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국유화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충분하게 보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유화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북투자의 보호 차원에서 남북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투자보호의 대상, 국유화의 사유(불가피한 사정), 보상의 범위와 방법, 보상절차, 대위변제권(代位辨濟權)의 행사 등 대북투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법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대북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증 및 손실보전

많은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수출보험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의 추가적인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북한에 진출한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에 의한 손실보조는 북한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비사업적 위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경영상·사업상의 위험은 기업 스스로가 책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보험에 의한 보호는 신용위험과 송금위험과 같은 최소한의 보험대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

여 북한진출기업의 생산활동 보장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표준정형계약서 마련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북한측 당사자와 체결하는 합영 내지 합작계약은 선례로 남아 후발기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기측에 유리한 표준정형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북한의 표준정형계약서와 실제로 외국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주로 합영계약서)들을 입수하여 이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동협력하여 우리측의 표준정형계약서와 표준기업규약(또는 정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개선요청

북한의 투자환경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① 기업의 출자금액 감액불가, ② 의사결정 방식의 엄격성, ③ 직원의 채용·해고시 북한노동행정기관의 허가 등 노무관리의 경직성, ④ 사장 및 부사장 선임방법의 불확실, ⑤ 현물자산, 발명권 등 화폐 이외의 출자대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의 불분명, ⑥ 기준임대료와 사용료 책정의 불명확, ⑦ 외화거래의 경직성 및 제한성, ⑧ 분쟁해결방법의 제한 ⑨ 외국투자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미흡, ⑩ 기술도입 관련 법령 부재, ⑪ 기업파산에 관한 법령(「외국인기업법」 제30조 참조)의 미제정 등

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남한기업이 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에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확성, 구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소한 외자유치법령이 중국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 북한당국에 대해 문제조항의 개정·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우선적으로 손질이 예상되는 법령부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계관련규정, 중재관련규정, 기술도입관련규정, 임대료와 사용료의 표준화, 장려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등에 관해 북한측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해 주도록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만의 경우에서 보듯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 북한당국이 투자촉진을 위한 우대조치를 마련해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5) 정보의 제공 및 대북투자 안내

남한기업이 북한측과 합영하기 위해서는 북한측 파트너가 북한내에서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승인기관과의 견조율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측 당사자의 사업규모와 실적, 북한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특히 합영가능성의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북한에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그 동안 직접 지득하거나 또는 먼저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은 북한관련 경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북투자시 기업들간의 과열경쟁, 북한측에 대한 과도한 금품 제공(뒷돈거래), 대북사업의 지나친 홍보나 과대포장 등의 행태는 바람직한 남북경협 질서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는 대북투자의 적절한 안내 및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기업들을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 차

I. 서 론	1
II. 외자유치법령의 제정배경과 특징	4
1. 법령의 制定背景	4
2. 法體系	8
3. 법령의 성격 및 특징	11
III.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25
1. 기업의 설립과 출자제도	25
2. 경영 및 노무관리	34
3. 기업의 외화 및 토지 이용	54
4. 기업에 대한 조세	64
5. 보험 및 산업재산권제도	71
6. 분쟁해결제도	77
7. 기타	87
IV. 종합적 평가 및 고려사항	98
1. 외자유치법령의 종합적 분석·평가	98
2. 남북경협시 고려사항	103
V. 결 론	120
참고문헌	123

I. 서 론

북한은 80년대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90년대에 들어 와서 대외개방을 정책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조치는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선봉지역을 중국의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는 체제유지에 미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오지(奧地)인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이름하에 외자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

이후 북한은 이듬해인 199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외자유치법령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① 투자우대지역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② 외국인의 100% 전액출자 등 다양한 투자형태의 허용, ③ 각종 투자우대조치 강화 등 외국인투자의 유인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자유치법령의 정비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³⁾

-
- 1) 중국의 경제특구 전략은 경제특구를 대외경제개방의 창구로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경제적 목표), 특구에 시장경제체도를 도입,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융합시킴으로써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체제개혁적 목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특구내의 생산과 유통 등 자원배분을 주로 시장조절기능에 맡겨 왔다.
 -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소위 「황금의 삼각지역」(Golden Triangle)에 속하는 지역이다. 현재 UNDP는 이 지역을 국제관리하에 공동개발하여 장차 국제적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 3) 북한사회과학원 세계경제남남협력연구소장 리행호는 Erina Report에서 1991년 12월 이래 1997년 12월말까지 111건 7억 5,077만달러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투자된 규모는 77건 6,242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李幸浩, “羅津-先鋒經濟貿易地帶의開發とその特徴,” ERINA

남한의 대북투자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다른 해외투자지역에 비해 거리가 가깝고 일본이나 대만 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하지 않은 편이며, 의사소통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은 남한기업들에게 있어서 투자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경협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 및 남북경협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특히 교통·통신의 문제), 자본의 논리가 통용되기 어려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폐쇄성, 협소한 내수시장, 당국간 대화 거부 등 경직적인 대남자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외자유치법령들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대북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은 외국인의 대북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적 환경은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며 법규 해석·적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경제적·기술적인 환경이나 교통·통신 등 하부구조상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의 정비상태를 면밀하게 추적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 외자유치법령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 내지 남북경협 활

REPORT, vol. 24 (1998年 8月號), p. 29.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자유치 현황에 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나진·선봉지대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1998년 7월말 현재-”, 「북한뉴스레터」, 1998년 10월, pp. 18~22 참조.

성화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의 북한 외자유치법령에 관한 연구는 학계와 일부 실무가를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현실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관련법령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연구가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남북경협 추진시 기업과 정부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⁴⁾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은 기업의 설립, 경영관리, 외화 및 토지 이용, 조세, 보험가입 및 산업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 필요할 경우 북한의 외자유치법령과 중국·베트남의 관련법령을 비교·고찰함으로써 북한의 법·제도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는 정책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북한에서 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당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이다. 그 때문에 북한의 법은 당정책에 종속되어 있고, 정치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또한 북한의 법규범과 법현실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적용 실태를 연구·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을 법내재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작업은 아니라고 하겠다. 법규범의 정확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법운용현실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교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외자유치법령의 제정배경과 특징

1. 법령의 制定背景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지원과 주민소비 억제를 통한 내부자원 동원의 극대화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 시작된 제1차 7개년계획은 중·소 이념분쟁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국가 지원 감소로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⁵⁾

1969년 중·소간 국경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이들 양국에 대하여 등거리외교를 추진하던 북한에 대하여 이들 국가의 원조가 감소하게 되자, 중·소의 지원에 한계를 느낀 북한은 경제개발 6개년계획(1971~1976)에서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oil shock) 및 북한의 주력수출상품(연, 아연 등 1차상품)의 국제가격의 급락으로 외채누증만을 초래한 채 경제개발 6개년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이처럼 사회주의국가 경제지원 감소 속에서 외채상환 능력 상실로 인한 서방차관의 도입 부진, 설비관리·운용능력 부족 등으로 경제개발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외채상환의 부담없이 서방의 자본·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방도로써 1984년 9월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1979년 제정)을 모델로 한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이어 1985년 3월 「합영법 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을, 1985년 5월

5) 統·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統一速報」, 제 92-11호 (1992), p. 3.

「합영회사소득세법 세칙」 및 「외국인소득세법 세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1986년 8월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고, 1988년 12월에는 정무원내에 합영공업부를 신설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서방국가 및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89년부터 기존 「합영법」 하에서 사유 합영회사, 즉 외국인이 100% 단독투자하여 경영하는 회사의 설립을 사실상 묵인하기 시작하였다.⁶⁾

그러나 「합영법」의 제정 및 북한의 외자 유치를 위한 몇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① 정치·사회적 폐쇄성, ② 낮은 대외신용도,⁷⁾ ③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 ④ 내수시장의 협소, ⑤ 외자유치 관련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합영유치 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북한의 체제개혁이 병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투자환경은 서방기업가들로부터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기업과 재일 교포 회사간 소액규모의 합영을 제외하면 서방과의 합영실적은 미미하였다. 예컨대 1991년말 현재 조총연계 재일 상공인들이 주류(68건)를 이루는 100여건의 합영계약만이 체결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1억 5천만달러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⁸⁾ 1989년 이후 동구 및 소련에

6)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2), pp. 34~35; 崔周煥, 「北韓經濟論」(서울: 大旺社, 1992), p. 202. 그러나 합영공업부는 1990년 10월 폐지되었다.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2), p. 244; 董容壽,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 법규 정비의 배경 및 의미,” 「世界經濟」(三星經濟研究所), 제41호(1992. 10. 25), p. 48 참조.

7)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서방권에 대한 대외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대외신용도가 계속 하락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에 국제은행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 신용도 최하위국가, 즉 조사대상 총 113개 국가중 우간다, 수단 다음으로 대외신용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Institutional Investor* (March, 1992), p. 120 참조.

8) 統一院 情報分析室, 「週間 北韓動向」, 제95호('92.10.18~10.24), p. 8; 統一院 敎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p. 4.

서의 사회주의체제 해체, 특히 대외무역의 50% 이상을 의존해 왔던 대소 경제관계의 붕괴로 인해 주요 해외시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대외 무역규모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경제침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⁹⁾

외교적 고립으로 경제침체가 더욱 가속화되었는 바, 북한은 점차 경제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당면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합영법 등 기존의 미비한 투자유치제도만으로는 북한이 희망하는 수준의 충분한 외자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북한은 1991년부터 당면한 경제난 타개의 방편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은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free economic trade zone)의 설치로 구체화되었다.¹⁰⁾

본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은 1990년 7월 중국 長春에서 열린 제1차 「동북아경제기술발전회의」(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라는 이름의 민간 국제학술회의에서 처음으로 소개

9) 1991년도 무역총액은 27.2억달러로 전년비 57% 감소되었으며, 경제성장율은 -5.2%로 1990년도(-3.7%)보다 더욱 침체되었다. 統一院, 「'92 北韓概要」(서울: 統一院, 1992), pp. 224~230 참조.

10)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이 우수한 자연조건과 양호한 항만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바, 최소의 비용으로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새로이 항만을 건설하여 이를 기반으로 두만강 인접지역에 조선·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유치할 경우 근경에 처해 있는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 19.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추가지정 가능성에 관해서는 崔壽永,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pp. 83~85 참조.

되었다.¹¹⁾ 이 구상은 1991년 7월부터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관여한 이른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한 그와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에 이어 남한과 서방국가들로부터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투자여건 개선에 착수하였다. 북한은 먼저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어 후속조치로 동년 10월부터 일련의 외자유치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모두 50개가 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합영법」 발표이후 8~9년만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한 것은, 제한적이긴 하나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대북투자에 따른 외국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대외경제개방으로의 정책전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주체경제노선’을 추진한 결과 선진과학기술 도입을 소홀히 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낙후는 물론 경제난 심화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정하였음을 함축하고 있다.¹²⁾

11) 제1차 「동북아경제기술발전회의」에 관해서는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 및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統一情勢分析 92-07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9~12 참조.

12)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제정배경에 대해서는 오길남,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北韓』, 통권 제252호(1992년 12월), pp. 22~31; 金淳培, “외국인투자법령의 제정,” 『통일』, 통권 제135호(1992년 12월), pp. 60~62; 동용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 법규 정비의 배경 및 의미,” pp. 47~50 참조.

2. 法體系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1992년 10월 5일 외자유치 법령으로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북한은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위해 이 법을 포함해서 모두 57개의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상위법) 내지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합작법」(1992.10), 「합영법」(1984.9 제정, 1994.2 개정)과 「외국인기업법」(1992.10)은 「외국인투자법」의 하위법으로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외국인 단독출자기업)의 창설 및 운영방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¹³⁾ 북한은 합영·합작·단독투자 등 3개 투자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시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합영법 시행규정」(1995.7), 「합작법 시행규정」(1995.12)과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1994.3)¹⁴⁾을 각각 제정하였다.

13) 統·院 교육홍보국,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p. 5; 全洪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北韓經濟研究센터 研究資料 93-05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3.3), p. 3; 유입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협력방안,”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제과제」 (서울: 건국대학교 현대이념비교연구회, 1993. 6), p. 6;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 불구 투자수용한계 드러내,” 「內外通信」, 제818호(1992.10. 22), p. A1.

14)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은 1994년 3월 27일 정무원 결정 제13호로 채택되었는데,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라는 제정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인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인 단독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다. 3개의 투자형태를 규율하는 시행규정 중에서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이 가장 빨리 채택되었다. 이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아직 합작법 시행규정은 채택되지 않았고 합영법 시행체적이 개정되지 않은 사실은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치할 수 있는 외국인기업에 많은 배려를 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3가지 형태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칙(하위법)들을 마련하였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의 토지임대 및 이용에 관한 「토지임대법」(1993.10) 및 「토지임대법 시행규정」(1994.9)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의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1993.12)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1993.1)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법도 역시 「외국인투자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1994.2)은 이 법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데, 이들 법령의 채택으로 기존의 「합영회사소득세법」과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세칙」은 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폐지되게 되었다.¹⁵⁾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부가계산규정」(1995. 12),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규정」(1996.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1996.2),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1996.7), 「외국기술도입규정」(1996.8), 「토지, 건물의 출자규정」(1996. 12) 등이 제정되어 있다.

「自由經濟貿易地帶法」(1993.1)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동시에 「외국인투자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갖는다.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의거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1993.11),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1995.6),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1996.2), 「자유경제무역지대 국경검역규정」(1996.6),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1996.7),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1996.7),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1996. 9), 「자유경제무역지대 국내투자기업 창설 및 운영규정」

15)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최근 6개 外國人投資關聯 法 制定을 中心으로-,” 「主要國際問題分析」(外交安保研究院, 1993. 4.28), p. 13.

정」(1997.5)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25개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제정된 하위규정으로서 말하자면 분야별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자유무역항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의 출입·체류 및 거주와 질서, 선박 및 선원 출입 등 항의 출입 및 이용에 관한 질서,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관리, 세관통관질서의 유지 및 특혜관세제도의 설치 등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외국인투자시 적용될 금융관련 법령으로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을 규정한 「外國投資銀行法」(1993.10) 및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1994.12), 「외국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1996. 7)과 외화의 거래 및 반출입 등에 관한 원칙과 질서를 규율하는 「외화관리법」(1993.1)과 「외화관리법 시행규정」(1994.6)을 채택하였는데, 이들도 「외국인투자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북한은 「세관법」(1993. 11), 「대외경제계약법」(1995.2), 「공증법」(1995.2), 「보험법」(1995.4), 「대외민사관계법」(1995.9), 「민사소송법」(1994.5), 「환경보호법」(1986.4) 등의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법들에는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는 물론 남한기업들도 이러한 부수적 법령들의 적용실태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법령정비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북한의 법적·제도적 하부구조는 일단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이 지금까지 제정한 외자유치법령을 기본법과 하위법, 부수법령 등으로 체계화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3. 법령의 성격 및 특징

최근 제정된 일련의 외자유치법령에서는 1980년대의 구 「합영법」은 물론 1992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을 때보다 투명성과 구체성이 훨씬 제고되었다. 구 「합영법」 체제하에서는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은 「합영법」,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및 이들의 시행세칙이 전부였고, 기타 사항은 북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는가가 불명확했었다. 또한 법령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었기 때문에 불분명한 사항의 해결은 대부분 김일성 및 김정일의 방침이나 북한감독기관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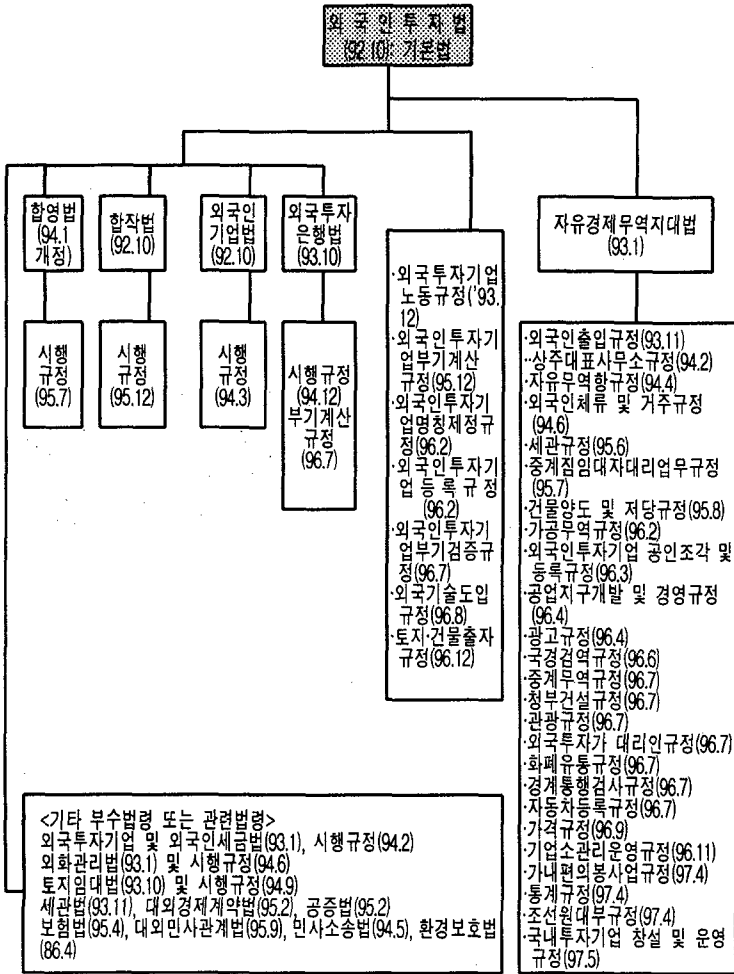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의 법령들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성격과 활동 범위, 설립절차, 경영활동 등 운영방식, 결산방식, 존속·해산 및 청산절차 등에 관해 보다 상세하고 투명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¹⁶⁾ 「외국인투자법」의 일반조항들도 그 후 제정된 일련의 세칙적 규정들에 의해 많이 보완되고 구체화되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외자유치법령의 제정은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또 최근의 법령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¹⁷⁾

16)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輸銀調査月報』, 제12권 3호 (1993. 3), pp. 11~14. 이러한 투명성과 구체성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장려 및 투자제한·통제조항들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앞의 논문, pp. 17~21;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최근 6개 外國人投資關聯法 制定을 中心으로-,” pp. 15~17 참조.

17) 권오승 교수는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특징을 ① 관련법령 정비의 미흡, ②

<표 1: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체계도>



중앙집권적인 관리체제, ③ 체제유지적인 외자유치, ④ 경영활동에 대한 강한 통제, ⑤ 민족자본에 대한 배려 결여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權五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 「북한연구」, 제4권 4호 (1993), p. 102.

가. 외국인투자 형태의 확대·다변화

북한은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를 장려하는 방침을 채택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외자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합영에 국한되어 있던 외국인투자 형태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합영 외에 합작, 외국인 단독투자의 3가지 형태로 확대하였다(「외국인투자법」 제2조).¹⁸⁾

합영(equity joint venture)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공동투자, 공동경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투자형태로서 이익배분과 손실부담은 투자지분에 따라 결정되는 전형적인 합작투자 형태이다.¹⁹⁾ 이에 비해 합작(contractual joint venture)은 「공동투자, 북한 단독경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투자형태로서 이윤발생시 이윤의 배분방법은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²⁰⁾ 따라서 양자의 차이는 북한측이 배타적으로 경영하는가 아니면 외국인의 참여가 허용되는가 여부, 즉

18) 중국에서는 합영을 중외합자경영, 합작을 중외합작경영, 단독투자방식의 외국인기업을 외자기업이라고 부른다.

19) 「외국인투자법」 제2조 5문 참조.

20) 「외국인투자법」 제2조 4문 참조. 「합작법」 제2조는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법」상의 정의규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에서 사용된 운영이라는 용어가 합작법에서는 ‘생산과 경영’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합작기업 운영의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북한이 전부 손실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외국인투자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합작의 경우 합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이지만, 계약에서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측이 단독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의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영권의 행사방식에 있다.²¹⁾ 한편 외국인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은 단독투자(외국측 투자가가 100% 전액출자)·단독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익과 손실 부담은 전적으로 외국측 투자자에게 있는 기업형태로서 북한측 투자가의 경영권이 배제되어 있는 투자형태를 말한다.²²⁾

특히 북한이 외국투자가가 100% 단독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형태인 외국인기업을 새로이 허용한 것은 외자유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북한은 외국투자자에게 북한내에서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²³⁾ 외국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경영활동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외국투자은행법」 제2조 및 제3조). 이는 외국은행의 금융활동을 제도적으로 용인함으로써 외자유치의 촉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1)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형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합작개념과 서구의 합작개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래 서구에서 사용되는 합작 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라는 개념은 지분합작투자(equity joint venture)와 비지분합작투자(non-equity joint venture) 내지 계약적 합작투자(contractual joint venture)를 모두 포함하는 데 비해, 북한에서 사용되는 合作은 후자만을 의미하며,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합영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합작은 서구의 그것보다 좁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2) 「외국인투자법」 제2조 6문 참조. 이와 같은 단독투자의 정의는 「외국인기업법」 제2조 및 동 시행규정 제2조 2문에서 반복되고 있다.

23) 지금까지 북한에서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합영은행으로는 조선합영은행(조총련과의 합영),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 ING동북아시아은행, 조선통일발전은행(홍콩의 루비홀딩사와의 합작), 華麗銀行 등이 있다. 이 은행들에 관해서는 東아시아貿易研究會, “朝鮮の銀行事情,” 「東아시아經濟情報」, 1997년 6월號;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은행제도 및 주요은행,” pp. 16~23 참조. 최근 북한에서 유일하게 중국 인민폐 결제업무를 취급하는 북한과 중국간의 합영은행인 華麗銀行이 북경과 심양에 지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통신속보」, 1998년 12월 16일자 참조.

나.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은 세제와 토지이용의 면에서 부분적으로 중국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시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10조 등을 참조). 우선 기업소득세율을 중국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고, 기업소득세의 감면사유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0년간의 토지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토지이용권의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 및 저당을 허용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5조, 「토지임대법」 제6조 및 제15조).

아울러 외자유치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의 대북 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재산 국유화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9조).

둘째,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청산 후 남은 자금의 국외송금을 허용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영법」 제42조, 「합작법」 제15조, 「외국인기업법」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5조).

셋째, 기업경영상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21조).

이처럼 일련의 외자유치법령의 제정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가 외형상으로 대폭 개선되었는데, 이와 같은 외자 유치·보호를 위한 조치는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대북투자 회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⁴⁾

24)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p. 42;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 2면 참조.

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내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 조치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외자유치 법령에서 미비했던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일종의 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제정은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자유치에 관심이 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관한 북한의 관심은 지금까지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모두 57개의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련된 법령이 26건으로 45%를 상회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 북한이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제37조에서 외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는 …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문을 추가한 것도 북한당국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유치에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⁵⁾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한하여 100% 외국인 단독투자에 의한 외국인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3조, 「외국인

25)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용어 대신 특수경제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이 나진·선봉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을 추가로 경제특구로 지정할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은 원산 및 남포를 보세가공지대, 금강산 일대는 관광특구, 신의주 및 단천 등을 특수경제지대로 대외경제개방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외, 「북한헌법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 統一情勢分析 98-0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6.

기업법」 제1조).

둘째,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는 수출입물자를 비롯한 특정의 물자에 대한 무관세(「외국인투자법」 제9조 1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6조), 소득세 감면 및 낮은 소득세를 적용(「외국인투자법」 제9조 2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6조 및 제37조) 등 외국인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의해 상품의 가격결정을 인정하고 있다(「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2조 1문).²⁶⁾

넷째,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외국투자자들의 무사증 출입 등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0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1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6조).

다섯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최고 50년까지 토지임대를 허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는 첨단과학기술분야 등 장려부문에 투자할 경우 유리한 입지조건외 토지 임대 및 낮은 임대료 징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우선대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8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8조 및 제39조).

여섯째,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 최저임금은 220원인데 비해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60원(약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26조 참조).²⁷⁾

이상과 같은 특혜 부여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대

26) 그러나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2조 2문.

27) 나진·선봉지역의 투자환경 및 외자유치법령에 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및 관련 법규」, 무공자료 96-47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6) 참조.

한 북한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라. 「통제된 개방」정책 추진

북한의 외자유치 법령 제정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전환의 신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외자유치 법령의 여러 곳에서는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개방의 바람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국한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 전역에서 합영과 합작을 허용하면서도 외국인 단독투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로 한정된 것(「외국인투자법」 제3조)은 북한 체제에 미치는 개혁·개방의 여파를 극소화하는 가운데 이 지역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된다.²⁸⁾

둘째,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을 제정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사증 대신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초청장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6조). 그러나 북한당국은 초청장 발급과정에서의 개입과 출입국절차와 관련, 초청장 소지 여부의

28) 물론 이같은 사실은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만 허용되는 단독투자형태인 외국인기업을 반드시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도 합작기업의 설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 지역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각종 우대조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북한은 외국과의 경제협력 면에서 그들이 경영을 담당하고 투자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과 체제유지를 제1의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 및 외환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기업보다는 합작기업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영기업의 설립이 불가피하더라도 북한은 합영기업을 사실상 합작기업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들이 경영권을 지배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를 통해 외국인의 출입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셋째,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에서 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사실상 상주기한 연장의 허가여부를 매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북한당국이 수시로 검열할 수 있도록 한 것, 상주대표사무소와 구성원이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외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8조, 제29조)들은 북한의 개방이 제한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체제개방의 파급효과를 우려한 나머지 북한이 통제된 구역에 한해 자본주의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제한적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것, 달리 말하면 체제유지와 대외개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계속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외국인투자의 실험장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 외자유치법령 정비를 통한 북한식 대외경제개방은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메카니즘을 대폭 수용하는 근본적인 체제개혁은 하지 않고, 단지 법·제도와 행정적인 관리방안의 개선만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 生産手段의 國有化原則에 대한 예외 인정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토지임대법」에서 제한적인 범위에서나

마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고 판매, 재임대, 증여 등을 허용하고 있다. 본래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서는 생산수단 국유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토지(생산수단)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며 예외적으로 농지에 한해 협동적 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은 「생산수단 국유화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경제개방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생산수단 소유주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1998년 9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도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²⁹⁾ 이 같은 사실들은 당면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적인 토지이용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음을 북한 지도부가 뒤늦게나마 인식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계약상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토지에 대한 권리가 북한당국에 귀속될 때 투자자가 투자한 건물 및 기타 부차물을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토지임대법」 제34조). 이것은 북한이 생산수단의 국유제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려는 입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북한이 개방을 추진하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보다 더욱 엄격한 중앙통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셈을 확인할 수 있다.

29)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20조는 “...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일부 수정하였다. 여기서 사회협동단체라는 용어는 협동단체와 사회단체(조선노동당, 직맹, 여맹,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등이 포함)를 포괄하는 합성어이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의해 사회단체에 의한 합법적인 생산활동이 보장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대외무역 활동에 종사해 온 노동당산하 기관들이 생산수단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당 소속의 생산기업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영 외, 「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 p. 2.

마. 남한기업에 대한 적용 시사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하고 있는 일련의 외자유치법령은 남한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은 대북투자 주체의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 「합영법」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또는 개인과 합영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구 「합영법」 하에서 한국은 소위 북한의 「하나의 조선」 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가 아니었고, 더욱이 ‘해외’의 지역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따라서 동법의 남북관계에 대한 적용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사실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것은 당초부터 조총련계와의 합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2년 10월에 제정된 외자유치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의 기관·회사·기업체·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물론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제5조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합영법」은 물론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다른 법에서도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를 두고 그 의미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먼저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라는 표현은 한국인의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구 「합영법」에서는 남한기업이나 개인을 투자당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최근의 법령들에서는 모두 “공화국 영

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남한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대북투자의 문호를 사실상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견해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업무에 종사하는 고위간부들이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한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한국인이거나 한국기업도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투자(합영투자, 합작투자 외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 허용되는 100% 단독투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무역선 및 선원들에 대해서 무사증제도에 의한 자유입항을 허용키로 한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³¹⁾

이에 반해 해외거주 조선동포로부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표현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하나의 조선’ 정책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한 상기와 같은 표현의 수정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의 노동당규약이나 사회주의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공화국의 영역’은 전(全)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남조선 내지는 공화국의 남반부로 인정될 뿐이라는 것이다.³²⁾ 따라서 한

30) 裴鍾烈, “北韓의 合營法 施行細則 改正과 우리의 對應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5호 (1993.5), pp. 11~14 참조;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p. 15; 統一院, 『北韓動向』 (1992.11), pp. 121. 그러나 대만동포의 투자에 대한 投資獎勵規程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보다 대만동포의 투자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할 때 북한의 법규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1) 權五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 p. 102.

32) 李東馥, “남북대화: 1993년의 전망,” 『새시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서울: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1992.12.28), pp. 36~37 참조.

국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기업이 아니라 공화국 내의 기업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한다.

생각컨대 남북기본합의서와 3개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보면 남북한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에 입각하여 남측·북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³³⁾ 또한 북한의 대남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감안할 때 북한이 여전히 '공화국'을 한반도 전체로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논리가 남북관계에 언제나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한국을 공화국 영역 내의 지역으로 간주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필요시 공화국 영역 밖의 지역으로 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⁴⁾ 이렇게 볼 때 「공화국」 개념의 해석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며, 「외국인투자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치·이념적 분야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조선' 논리를 견지하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이같은 논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

33) 남북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의 서명란에서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국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합의서들의 본문에서는 정식국호는 물론 남한·북한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34) 그런데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기 전이나 또는 이 법이 제정된 후인 지금이나 남한기업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재일동포나 재미동포 또는 제3국인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제3국 현지법인(많은 경우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의 형태일 것임)의 명의로 북한에 간접진출(즉 우리기업의 스스로의 이름으로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은 제3국 법인의 명의 속에 가려진 상태이므로 북한측 입장에서는 법률상 남한기업이 아니라 외국인의 자격으로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경우도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대북 간접투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업은 「합영법」에 입각한 남북한 기업의 지분합작투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말하자면 북한식의 편의주의적인 정경분리 방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의 대북투자 허용규정은 북한 당국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³⁵⁾ 다만 이 문제를 서구식의 합리적인 사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북한의 관행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5) 1997년 12월 12일 외환은행이 KEDO지점은행의 자격으로 신포 경수로부지 내에 금호출장소를 개소하였다. 외환은행의 출장소 설치근거는 1997년 1월 8일 KEDO와 북한간에 서명·발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Protocol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Labor, Goods, Facilities and Other Services for the Emplementation of a Light-Water Reactor Project, 약칭 「서비스의정서」) 제9조(금융서비스)와 이에 의거하여 채택된 「비북한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합영은행의 설립절차」(Procedures for Establishment of Non-DPRK Bank's Representative Office and branch and Joint Venture Bank)라는 양해각서의 1.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의 1)이다. 이처럼 경수로부지내에서의 외환은행 진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북한지역 내에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가 허용된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9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은 1984년에 제정된 구 「합영법」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나, 규정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다. 자의적(恣意的) 해석·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기에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은 일반적으로 실효성(實效性)의 담보가 약하며 또 나라에 따라서는 차별대우(差別待遇)의 가능성마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은 경쟁국에 해당되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하여 개방의 내용과 폭은 물론 법령의 정비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데 있다. 북한법령의 국제경쟁력 결여는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필요한 외화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투자거나 남한기업들이 대북투자를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 사항을 중심으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업의 설립과 출자제도

가. 투자대상

외자유치법령에서는 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투자가능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에서는 대부분 ‘~를 비롯한 여러 분야’로

표현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능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법」 제6조, 「합영법」 제3조 1문, 「합작법」 제3조, 「외국인기업법」 제3조간의 표현상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투자가능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료성은 북한당국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즉 외자유치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분야에 남한기업이 투자하려 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우대조치가 인정되는 투자장려대상과 관련하여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의미, 특히 그 구체적인 기준도 분명치 않다(「외국인투자법」 제7조 및 제8조, 「합영법」 제3조, 「합영법 시행규정」 제9조, 「합작법」 제4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5조,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8조 참조). 북한의 기술보다 앞선 것은 모두 현대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술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가의 최첨단 기술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아울러 투자금지 내지 제한대상과 관련해서도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외국인투자법」 제11조, 「외국인기업법」 제3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9조 1호 참조)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³⁶⁾

36)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전략」(서울: 통일원, 1993.10), pp. 39~40.

나. 기업의 설립

외국투자가나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하려 할 경우, 그 설립방식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단독출자기업(외국인기업)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³⁷⁾ 「합영법」과 「합영법시행규정」에 따르면 북한측 당사자가 맡아서 합영기업 설립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합영기업 설립절차는 대체로 ① 사전심의, ② 정식 합영계약 체결과 당국 승인신청, ③ 합영기업 등록, 세무 및 세관등록으로 나누어진다. 합작기업의 설립절차는 설립신청시 북한당국의 승인기한, 설립승인 후 기업의 등록기한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합영기업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다. 외국인기업이나 그에 준하여 설립되는 남한단독출자기업의 설립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 허용되며 신청창구가 지대당국이라는 점³⁸⁾ 등 약간

37)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북한측 당사자와 합영, 합작, 단독투자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고 부르는 것은 남북한 특수관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 적용할 별도의 법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여기에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포괄적으로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기업의 3가지 북한진출방식을 대북투자(또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남한단독출자기업을 총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함)로 총칭하겠다.) 외국인투자기업, 즉 합영기업, 합작기업, 남한단독출자기업(외국인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은 모두 북한의 법인(法人)이 된다. 「외국인투자법」 제14조 1문.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영역내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북한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북한의 개방 관련 법체계상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외국에서 설립되고 등록된 「외국기업」(북한법인이 아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관해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조 3문 및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2조 4문,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3조 참조.

38)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투자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인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투자신청을 지대당국(시행정경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신청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

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설립의 기본구조는 합영·합작과 큰 차이가 없다.³⁹⁾

기업설립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은 주로 사전심의에 관한 절차이다. 외국투자거나 남한기업과 합영을 하려는 북한측 투자자는 해당 기업과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⁴⁰⁾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범위, 관계기관에 대한 문의방법과 절차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합영법」과 동 시행규정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로 문의사항별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가계획위원회는 예비기술과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발명권과 기술문헌, 재정부는 출자·이윤·경제타산서 등 경제관계문헌, 국가건설위원회는 건물의 시행설계, 합영공업총국은 경제타산자료·계약서·합영회사 규약초안을 각각 사전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설립 절차에 관한 법규의 불명료성은 가능한 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단독출자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주로 북한측이 담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 측면에서의 결정적인 문제점이라고는 하기 어렵다.⁴¹⁾ 그러나 합영 및 합작기업의 설립에서 외국 투자거나 남한기업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측 당

추진위원회,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1995. 9 참조.

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무공자료 95-48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 pp. 33~37 참조.

40) 「합영법 시행규정」 제13조.

41) 합작의 경우 현재 북한측 투자자가 기업설립을 위한 실무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합영 및 합작기업의 경우 대체로 북한측 파트너가 맡아서 설립절차를 밟는다. 그에 비해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단독투자의 경우 우리 기업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해당기관이나 우리 기업이 선정한 북한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pp. 34~35 참조.

사자가 기업설립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도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9조 5호)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와 같이 기업설립 승인 불허사유가 분명치 않아 결국 외국투자거나 남한기업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외국인기업 창설에 필요한 신청서에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 타산서, 투자가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한 심의·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외국인기업법」 제7조). 그러나 필요한 문건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2조에서는 필요한 문건의 예로서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자가에 대한 증명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등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말미에 다시 ‘이 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 창설 신청시 제출해야 할 문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북한당국의 재량권을 남겨둠으로써 자의적 적용 내지 차별적 적용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 출자제도

(1) 출자재산의 평가문제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서 나타나는 출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출자지분의 평가부분이다.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의 경우 출자재산의 가격은 국제가격시장에 준하여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합의·결정하고,⁴²⁾ 외국인기업의 경우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⁴³⁾

여기서 국제시장가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의 외자유치법령에서도 통상 국제시장가격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제시장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가격을 지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가격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런던시장, 뉴욕시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통념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 북한식의 국제시장가격 개념은 혹시 중국시장의 가격일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요컨대 국제시장가격이란 언제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한 가격인지에 관해 남북한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해석함으로써 의견이 대립될 가능성이 있다.

구 「합영법 시행세칙」에서는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영주관기관(즉 합영공업총국)이 평가한데 따라’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⁴⁴⁾ 그에 비해 현행 「합영법 시행규정」

42) 「합영법 시행규정」 제39조 1문, 「합작법 시행규정」 제43조 1문.

43)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8조 2문.

은 ‘합영주관기관이 평가한 데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출자분의 평가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의 개입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합영당사자들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합의의 보지 못할 경우 그 해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⁴⁵⁾ 이와 관련,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서는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기술노하우로 출자하는 경우 그 평가는 각 당사자가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협의·결정하거나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에게 평정(評定)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⁴⁶⁾ 현물투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⁴⁷⁾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합영기업에 대한 출자재산의 평가방식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외국인기업의 출자재산 평가에 있어서는 북한당국의 부당한 개입 내지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북한의 심사승인기관이 출자재산 평가에 대해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의 투자는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44) 구 「합영법 시행세칙」 제30조.

45) 특히 토지·건물은 주로 북한이 출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적물인데, 이들의 평가기준이 불확실하여 북한측 투자자와 우리측 투자자와의 사이에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權五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 p. 107. 북한은 「토지임대법」, 「토지임대법 시행규정」에 이어 「토지, 건물, 출자규정」을 제정하였으나, 그 어디에서도 토지, 건물의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물재산, 산업재산권 및 기술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북한은 토지·시설 및 설비 등을 과대평가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측 기업의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을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6)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25조.

47) 안재진, “중국투자 백문백답,” 「북방통상정보」, 통권 제94호 (1993.8), p. 124. 그리고 토지에 관해서 중국은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986년에 표준토지사용료를 정한 바 있다.

가나 남한기업은 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출자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을 낮출 소지가 있다. 또 북한기관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불필요한 섭외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장기적으로 북한에서도 합영·합작·단독투자 할 것 없이 가능한 한 중국과 같이 신뢰성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방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⁴⁸⁾ 또한 외국인기업의 경우 북한당국의 승인권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출자재산의 범위

외자유치법령에서는 합영투자시 북한원화와 원료, 자재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한 회전 유통분으로 제한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32조). 이러한 출자목적물은 주로 북한측 당사자가 출자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출자한도의 제한은 북한당국이 출자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또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소유권(지적재산권)의 출자액을 총 출자액의 20% 이내로 묶어 두고 있는데(「합영법 시행규정」 제39조 5문), 이러한 규정 역시 외국인투자자가 화폐 또는 현물(특히 기계설비)로 출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⁵⁰⁾ 이 외에도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재산이나 재산권으로 출자하는 경우 신제품 및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하고

48) 김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제도,” 「북한뉴스레터」, 1996년 2월호, p. 16.

49) 물론 북한측 당사자가 원화나 원료, 자재로 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비용 부담없이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기업경영이 유리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50) 김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제도,” p. 16.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36조 1호 및 2호, 「합작법 시행규정」 제40조 1호;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9조 2호에서는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 생산을 조건으로 명시). 이는 북한당국이 화폐재산 이외의 출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하는 한편, 천진 자본재나 고급의 재산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3) 출자재산 계산단위의 북한원화 제한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서는 북한측 당사자든 외국측 당사자든 불문하고 출자재산을 북한원화로 계산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⁵¹⁾ 이 때문에 외화로 출자한 재산을 북한원화로 환전하여 계산할 때 단일 적용되는 무역환율에 따라 쌍방의 지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합영당사자가 합의한 외국통화로도 출자재산 및 자본금을 표시하는 것을 허용⁵²⁾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북한이 공식환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북한기업이 출자한 재산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높이는 반면, 외국 및 남한투자자의 출자재산을 부당하게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환율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율의 자의적 조정여지와 더불어 출자재산의 계산을

51) 출자재산의 계산단위는 북한원화로서 출자재산은 반드시 북한원화로 계산(평가)되어야 한다.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분당일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라 북한원화로 계산한다. 이는 합영기업이나 합작기업의 경우이나 공통적인 것이다.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외국인기업의 단독출자시 출자재산의 계산단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합영기업의 규정이 준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합영법시행규정」 제39조 2문 및 3문, 「합작법 시행규정」 제44조 1문 및 2문.

5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26조 1문.

북한원화로만 하도록 한 것은 북한이 외자유치의 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열등한 입장에 있게 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원화의 공식환율은 미화 1달러가 2.16원(1997년 12월 31일 현재, 북한무역은행 발표 은행현찰 매도율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⁵³⁾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수십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 극히 고평가되어 있는 환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적어지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점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의 개선과 더불어 투자재산의 실제가치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북한원화의 재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경영 및 노무관리

가. 기업의 운영

외국투자자나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할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합병의 경우

우선 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이 경직적이다. 합병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① 기본규약의 수정·보충, ② 출자분의 양도, ③ 업종 및 등록자본의 변동, ④ 존속기간 연장, ⑤ 기업해산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등 중요한 문제의 경우 이사회 회의에 참가한 이사들의 전원찬성

53) 한국은행, 「1997년 북한 GDP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1998.6), p. 7.

으로, 그리고 그 밖의 문제의 경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54조). 물론 이 규정은 중요한 문제의 경우 출석이사 전원일치의 찬성, 기타 문제의 경우 출석 이사의 2/3의 찬성을 필요로 했던 구 「합영법 시행세칙」(1992.10.16)보다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합영법 시행규정」의 의사결정방식은 대다수 국가의 이사회 의사결정방식(중요문제의 경우 출석이사의 2/3 찬성, 기타 문제의 경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보다 여전히 엄격한 것이다. 대부분의 중요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출석이사 전원일치제의 이사회 운영 방식을 따를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이끌어내기가 어렵다.⁵⁴⁾

따라서 전반적으로 합영기업 이사회의 의결방식은 외국측 또는 남한측 합영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북한측 이사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합영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측이나 남한측 이사가 항시 북한에 상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출석이사가 모두 북한측 이사로 채워질 수도 있고, 외국투자자측 또는 남한측 이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측 이사진들이 담합하여 남한측 합영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기업운영에 있어서 명백히 불합리한 결정을 하려 할 경우, 남한측 이사 1명만 반대해도 그러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4) 이처럼 북한식 합영방식은 투자비용과는 무관하게 合議的 意思決定(참석이사의 3/2 찬성)에 따른 공동의사결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투자비용에 따라 각기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본주의식 합작투자(equity joint venture)와는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p. 15.

다음 외국투자자의 경우 등록자본의 증자는 가능하나 감자(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제15조 3문, 「합영법 시행규정」 제47조).⁵⁵⁾ 감자금지조항은 외국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합영기업의 부실경영으로 경영합리화를 해야 할 경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외에 합영기업의 책임자(사장)와 부책임자(부사장)의 선임방법이 불확실하다. 우선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다. 일용 이사회에서 선출될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러한 추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출석이사의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하지 아니면 2/3의 찬성을 요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또 합영기업의 책임자를 이사 중에서 선출(이사회 성원이 아닌 자도 가능, 「합영법 시행규정」 제59조 4문)할 때 당해 이사는 투표권을 갖는지도 불분명하다.

55) 물론 등록자본의 감자금지를 명시한 데는 나름대로의 배경과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제22조에서도 합자경영 기간중에 등록자본 감자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합영기업의 유한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Chu Baotai,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 Question and Answer Guide* (Hongkong: University Publisher & Printer, 1987), p. 38 참조. 유한책임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그 회사의 재산을 한도로 하며, 각 주주가 최초로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 즉 기업의 등록자본(법정자본)은 기업이 채무를 책임지는 최초의 재산이 된다. 그런데 만일 기업이 등록자본을 임의로 줄일 수 있게 되면 채권자를 불안하게 하여 사회의 거래질서와 경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등록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경영논리가 당연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서도 등록자본의 감자규정을 두게 된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2) 합작의 경우

북한의 합작기업은 반드시 북한법인으로 설립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국의 합작경영기업은 중국내의 독립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중국에서는 합작기업의 경영도 계약에 따라 이사회방식, 연합관리기구방식 또는 일방당사자에 의한 위탁경영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다.⁵⁶⁾ 물론 북한식 합작기업도 중국식 합작기업을 모방하여 기업운영의 기초적 사항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 비해 북한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⁵⁷⁾ 합작기업의 경우 북한측 당사자가 경영을 전담하고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하는 데 반해, 중국식 합작기업의 경우 경영권 및 이윤분배 등이 계약에 따르므로 큰 제약은 가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윤분배방식에 있어서 제한이 없음은 북한의 경우와 중대한 차이라 할 수 있다.

「합작법」 제14조에서는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쓸 수 있다(may)”는 규정은 임의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대 해석을 가능케 한다. 또 여기서 사용의 주체가 합작기업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외경제기관인지가 불분명하다.

합작기업의 경영은 북한측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자나 남한측 당사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합작법」에서는 북한측과 외국투자자로 구성되는 비상설적 공동협의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56) Ibid, pp. 72~74 참조.

57)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p. 42.

(「합작법」 제16조 1문), 이 기구를 통해 외국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⁵⁸⁾ 결국 북한측이 방만한 경영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게 된다. 이는 우리 기업이 대북 투자에 대해 위험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이 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합작법」 제16조 2문).” 이와 관련하여 「합작법 시행규정」 제34조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몇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예시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합작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합작기업의 경우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제품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합작법」 제13조), 사실상 외국투자자 또는 남한기업이 그 판매(판로확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경우 합작기업의 활동에 당국의 간섭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외국의 물자·기술 수입에 대한 승인(「합작법 시행규정」 제66조 내지 제67조 참조)이라든가 매월 경영결산을 당국에 보고토록 한 것(「합작법」 제17조 1문, 「합작법 시행규정」 제89조 1문)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이 외에 「합작법 시행규정」 제52조 1문에서도 「합영법」처럼 감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작당사자 일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기업해산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다. 그러나 「합작법」에 의하면 정무원 대외

58) 비상설적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신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합작법」 제16조 2문). 이러한 문제의 협의를 두고 경영권 참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59)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법제분석 94-1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pp. 228~229.

경제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다(「합작법」 제19조 1문). 이러한 승인조건은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의 적자가 누적될 경우 외국측 계약당사자가 투자분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적자누적에도 불구하고 자본감소를 불허하는 규정 때문에 외국측 투자가가 북한측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자유로이 기업을 해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손분(缺損分)을 메꾸어야 할 경우 외국투자자는 대북투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⁶⁰⁾

합작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때 생긴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합작법」 제19조 2문). 이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이나 남한측 투자자는 합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측 당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가지 문제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계약불이행 책임이 북한측에 있다는 사실의 인정을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설령 북한당국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분쟁해결방식이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의 판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판이나 중재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단독출자(외국인기업)의 경우

단독출자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는 우선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외국인기업에 있어서 공업소유권과

60)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pp. 42~43.

기술비결의 출자평가액은 등록자본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 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외국인기업법」 제15조), 보험도 북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국인기업법」 제23조).⁶¹⁾ 이 조항들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의 보험제도는 현재 극히 미비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보험기관의 위험담보 능력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분간 외국인기업이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은행에 수출보험을 들거나 별도의 국제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조업중단)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국인기업법」 제29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8조에서도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하여 비슷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영업활동 중지, 해산 및 벌금 부과를 받게 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가 모호하다. 또 위반행위의 엄중성 여부도 전적으로 심사승인기관(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에 달려 있다. 나아가 북한당국이 언제라도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 금지 규정(「외국인기업법」 제5조 후단)을 근거로 하여 자의적(恣意的)으로 외국인기업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⁶²⁾ 요컨대 외국인기업의 영업중지나 기업해산에 있어서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61)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도 행정경제위원회를 도 인민위원회에 흡수·통합시켰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제139조~제146조) 참조. 통일부 정보분석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결과」(서울: 통일부, 1998.9.6), p. 2.

62) 「외국인기업법」은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으며(제3조 참조),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참조), 이들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북한당국이 이러한 불확정개념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상존하고 있고, 특히 남한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위험마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도 합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증자는 가능하나 감자(減資)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외국인기업법」 제26조 참조). 이는 외국투자가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고, 경영합리화에도 역행할 수 있다.

나. 경영관리

(1) 물자구입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자(주로 생산재)를 북한내에서 확보하려 할 경우,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맞물리고 수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합영법 시행규정」 제75조 1문 및 2문 참조). 현재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바, 계약상 형식적으로 북한물자의 구매권이 주어진다든 규정만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원자재 부족, 납기지연, 기준미달 등의 자재조달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물자 구입시 해당기관의 공급계획에 맞물려야 한다는 규정은 외자유치 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물자구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 우선 구입토록 한다는 비강제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다. 계획에 의한 공급분야도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조달물자가 배급품목인 경우에도 국가계획가격에 의하지만 국영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⁶³⁾ 베트남의 경우 국내물자 구입과 원자재 수입 여부를 전적으

로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비용조건상 국내물자 구입이 유리할 경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이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⁶⁴⁾ 결국 물자기업의 경우 베트남이 가장 좋은 조건에 있으며, 북한이 가장 열악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합영의 경우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기술의 수출입가격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결정(「합영법 시행규정, 제78조)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내부에서 물자기업 가격의 결정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⁶⁵⁾ 이것은 외국투자가 및 남한기업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투자환경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합작의 경우에는 북한내부에서 물자기업 가격이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작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합작법 시행규정, 제68조 1문). 일응 「합작법」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이 합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물자 구입가격 결정방식의 불명확성은 북한에 진출하려 하는 외국투자가 및 남한기업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63) Chu Baotai, *Foreign Investment in China: Question-and- Answer Guide*, p. 176; 한국무역협회, 「問答式 中國投資案內」, 국제 90-20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0.12), p. 108.

64) 그러나 국내공업기반이 취약하여 내수조달은 농·수산업, 광물 등 1차 원재료에 국한되는 실정이며, 외환부족으로 인해 관행상 외화형태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연구보고서 95-15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12), pp. 78~79.

65) 「합영법 시행규정, 제77조에서 단지 “합영기업은 경영용 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서 직접 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내수판매

90년대에 제정된 외자유치법령에서는 내수판매에 관한 규정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합작의 경우 북한내에서 판매하는 생산제품을 비롯한 모든 물자와 기술의 가격을 국가가격제정 기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합작법 시행규정」 제68조 2문). 또 단독출자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의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모든 해당제품의 판매가격,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판매하는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을 국가가격제정기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외국인기업법」 제40조 3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 만일 제품가격이 실제 생산비용보다 턱없이 낮게 또는 높게 평가되어 수익성 있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측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진출시 제품 판매가격의 결정에 북한당국의 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생산제품의 내수판매와 관련하여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내수판매 비율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합영과 단독출자의 경우 외국투자가측 또는 남한측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⁶⁶⁾ 나아가 내수판매

66) 중국은 외자기업이 투자허가 신청시 정관 및 계약서상에 내수판매 비율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내수판매 비율 범위 안에서 국내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생산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부족하여 수입해야 하는 제품일 경우에도 국내시장 공급이 가능하다. 내수판매 가격의 결정은 물가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국제시장가격을 참고해 결정되는데, 국영기업과 동종의 제품인 경우 동등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내수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완전한 가격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고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내수판매는 그리 용이하지 않다. 또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특구 밖의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중국교역 및 투자안내」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4.8), p. 342; 베트남에서는 내수판매에 관해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대금의 외환으로의 자유로운 교환가능성 여부도 우리의 현실적인 관심사이다. 하지만 북한의 법규에서는 이들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우리측에 불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북한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매우 낮고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북한내 판매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⁶⁷⁾

나아가 합영기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국가가 정해 준 기관, 기업소에 북한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합영법시행규정」 제84조 1문, 「합작법시행규정」 제74조 1문).⁶⁸⁾ 그러나 이 경우 판매대금은 (원료 및 자재비), 노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로 쓸 수 있다(「합영법시행규정」 제84조 2문, 「합작법시행규정」 제74조 2문)고 하여 북한화폐로 받은 판매대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생산제품의 수출: 수출상품의 비율 중심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서는 총 생산제품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기업설립승인신청시 서류

며, 단지 내수판매로 벌어들인 베트남 화폐를 외화로 바꾸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베트남」(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4), pp. 191~192.

67)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 81.

68) 외국인기업이 생산제품을 북한내에 판매하려 할 경우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야 하며, 특히 북한내의 상업망을 통해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37조 2문 및 3문). 외국인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40조 2문).

상에 제품수출비율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설립 신청서 상에 표시한 수출비율이 얼마나 기속력을 갖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베트남의 경우 내수보다는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소요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품의 수출비율과 베트남시장에서의 내수비율을 합의토록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수출주력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가 불비되어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총생산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조세감면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⁶⁹⁾

(4) 부기계산(회계처리)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의 하나는 손익과 직결되는 회계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에는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부기계산규정이 없어 북한에 진출하려 하는 외국투자거나 남한기업들에게 있어서는 회계처리방식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이 점을 의식한 북한은 정무원결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1995.12),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1996.7)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제도를 마련하였다.⁷⁰⁾ 이로써 그 동안 「합영법」(법 제30조, 시행규정 제95조 내지 제97조), 「합작법」(법 제17조, 시행규정 제78조 내지 제79조) 및 「외국기업법」(법 제19조,

69)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북한뉴스레터」, 1998년 11월호, p. 9.

70) 이 외에도 북한은 1996년 7월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을 제정하였다.

시행규정 제42조 내지 제43조, 제51조 내지 제52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법 제3조) 등에 산발적으로 명시된 회계처리상의 추상적인 내용과 불명확한 부분을 많이 해소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고(제6조) 부분적이지만 회계원칙을 명기하는 한편(제13조), 자산·부채·자본과 수익 및 비용을 구분하고 그 계산방법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라 가려는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등 국제회계기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첫째, ① 재무제표의 종류와 작성기준 및 양식, ②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③ 원가계산, ④ 재고자산평가, ⑤ 감가상각방법, ⑥ 필요경비의 기준과 인정범위, ⑦ 외환환차손익평가 등에 대한 회계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불분명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회계기관과 관련하여 「합영법 시행규정」 제125조에서는 “합영기업의 회계관련 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고 명시(제11조)하는 한편, 부기결산서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34조). 이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처리 과정에 있어서 재정검열원, 중앙재정기관, 부기검증사무소 등 여러 회계기관들의 관여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북한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재정검열원, 중앙재정기관, 부기검증사무소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관의 역할(권한)과 상호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특히 아직까지 부기검증사무소의 역할, 법적 지위, 활동범위 등에 관해 외부세계에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넷째,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화국의 재정부기일군, 또는 다른 나라 재정부기 일군의 도움을 받아 재정부기 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2조 1문)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외국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인정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또한 북한이 향후 스스로 서구식 공인회계사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⁷¹⁾

중국은 이미 1985년 3월 4일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재무부 공포)를 마련하여 독립적·중립적인 공인회계사제도를 도입하였고,⁷²⁾ 베트남도 회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른 회계 및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⁷³⁾ 북한도 점차 중국, 베트남과 같이 공인회계사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 및 원칙에 맞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회계처리에 관한 후속규정을 제정하여 부기계산규범의 미비점 및 불명확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71)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3.

72)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각 합영당사자가 납부한 출자액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인가한 공인회계사가 확인하여 확인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합영기업이 이를 근거로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73조에서는 “합영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인가한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기업의 년도 재무제표 및 년간 제계정의 감사를 시키는 동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問答式 中國投資案内」, pp. 196, 208. 그 후 중국은 1985년 4월에는 「합자경영공업기업 회계과목 및 회계제표(재무제표)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한편, 1987년에 「공인회계사조례」를 제정하였다.

73) 베트남은 1988년 「회계와 통계에 관한 법령」을, 그리고 1989년에는 「외자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인회계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p. 192, 195.

다. 노무관리

북한은 1993년 12월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구 「합영법시행세칙」을 통해 단편적으로 규율해 온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의 노동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하여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① 북한의 노동행정기관(인력알선기관)에 의존하는 노동력공급 규정, ② 북한 근로자의 고용의 무화와 외국인 고용의 제한, ③ 노동당 외곽조직의 성격을 갖는 직업동맹과의 노동계약체결, ④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다.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외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에 관한 북한의 법령에서는 북한당국의 간섭과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관리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중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기업소재지의 노동행정기관과의 계약 내지 합의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6조 3문, 「합영법」 제26조, 「합영법 시행규정」 제88조 및 제89조, 「합작법」 제11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76조, 「외국인기업법」 제20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4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1조 참조).⁷⁴⁾ 즉 외국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고용에 있어서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 물론 노동력의 선별채용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

74) 계약서에는 업종별·기능별 근로자수, 채용기간, 임금, 노동생활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11조 2문.

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주무행정기관이나 노동력공급기관으로부터 추천이나 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외에도 직접 공개모집할 수 있다.⁷⁵⁾ 따라서 이러한 나라에서는 노동력의 질을 고려하여 선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북한은 직접고용과 선별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채용단계에서부터 다른 경쟁국들보다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와 관련, 인력알선기관이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기업 소재지 안에 있는 노동력으로 보장해 주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지역 노력알선 기관이 이를 보장해 준다(「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12조 1문 및 2문)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동시에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동력을 받아야 한다(「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14조 1문)는 규정도 있어 외국투자기업은 노동력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또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13조에는 “북한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노동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선별고용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획에 따라 직장에 배치되는 노동력 이동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75)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勞動管理規定」 제3조에서는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기업소재지의 기업주관부서·노동관리부서의 추천을 받거나 또는 노동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합영기업이 자체적으로 모집한다. 어느 경우에도 합영기업이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합영기업이 고용여부를 완전히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없다. Chu Baotai, *Foreign Investment in China: Question-and-Answer Guide*, p.한편 베트남에서의 근로자 고용방식은 ① 지방노동사무소의 소개로 노동자를 선택하는 방식, ② 각 도시에 있는 노동공급서비스기관이나 투자서비스기관에 의뢰하는 위탁방식, ③ 기업이 직접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동자를 공개모집하여 직접선발 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 87.

북한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⁷⁶⁾

둘째,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은 노동조합이라고는 보기가 곤란한 직업동맹조직의 (기업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할 수 있고, 종업원들에게 정치사상교양사업과 ... 체육 및 문예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92조 1호,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9조 1호 및 2호).⁷⁷⁾ 근로자 교양사업이나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구실로 종업원들을 수시로 동원한다면, 이는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과 종업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9조 1문 및 4문). 특히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합영법 시행규정」 제93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0조),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자금과 활동조건까지 보장해 주어야 한다(「합영법 시행규정」 제94조 1문). 이러한 조항들은 외국투자기업의 자율권(自律權)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들로서 남한 기업들에게는 북한진출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⁷⁸⁾

76) 全洪澤·吳剛秀,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와 對北投資 推進方案」(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5), pp. 150~151.

77) 직업동맹조직은 종업원에 대해 정치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근본적으로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북한이 외국투자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합영법시행규정 제90조,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5조)고 규정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셋째, 원칙적으로 북한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채용시 당국(대의경제기관)과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6조 1문 및 2문). 외국인 채용시 별도의 수속절차를 밟도록 하여 가능한 한 내국인의 채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4조)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술인력(전문기술을 가진 기술자, 기능공, 숙련공 등)은 외국투자기업이 북한 내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 때에도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사실상 북한당국의 승인)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경영활동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⁷⁹⁾

넷째, 외국투자기업의 노동보수에 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경쟁국보다는 높은 최저임금(最低賃金)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월 220원(자유경제무역지대는 월 160원)이다. 이를 달러로 환산('98년 무역환율기준)하면 약 100달러(자유경제무역지대는 약 73달러)이다.⁸⁰⁾ 중국의 경우 지역별, 업종별 그리고 종업원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 임금수준 차이가 심하여 북한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은 최저임금액이 법규상으로 명기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⁸¹⁾

다섯째, 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도 북한의 노동행정기관과의 계약 내지 합의가 요구되는 바,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약하는 것이다. 채용기간 만료전의 해고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국투자

78) 裴鍾烈, “北韓의 合營法 施行細則 改正과 우리의 對應方向,” pp. 13~14 참조.

79)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0.

80) 이와 같은 북한의 최저임금은 북한내 노동자 평균임금수준인 50~75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중국이 외자기업 종업원의 월보수를 국영기업 수준보다 120~150% 높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81)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0.

기업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해고할 수 있도록 하되, 단 사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인력알선기관 및 직업동맹과 합의(「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15조)해야 하는 등 외국투자기업이나 남한기업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채용기간 만료 전 종업원 해고시 그 사유를 규정(「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15조 1호 내지 4호)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금지한 것은 다른 나라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섯째,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26조에서는 대북투자기업이 지불할 장려금과 상금의 지급기준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 이에 관한 법규나 지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 북한 종업원들의 작업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물질적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북한진출 조총련계 합영기업들의 사례에 의하면 1년에 한달분의 상여금을 달러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⁸²⁾ 현금에 의한 상금지불은 그 액수가 많아질 경우 외국투자거나 남한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으로서 장려금이나 상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진출에 관심을 갖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에 유념하여 북한당국에 대해 관련 법규를 보완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확실한 법적·제도적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1985년에 제정된 「합영법시행세칙」에는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의 7%, 종업원이 자기급여의 1%를 내

82)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조총련계 합영기업들이 물질적 인센티브를 달러로 지급할 경우 북한법규에 따라 생산제품을 강제매각해야 하며, 북한원화로 지급할 경우에도 물품의 부족현상으로 물품구입이 쉽지 않다고 한다.

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외자유치법령 하에서는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41조 2문),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료 및 기타 부담액을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⁸³⁾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서도(「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43조), 그 구체적인 부담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44조), 외국투자기업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덟째,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10조에서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노동행정기관이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 근로자들 자체의 단체행동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⁸⁴⁾도 있으나,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분쟁이 빈발하게 되자 파업권을 인정·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향후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

요컨대 북한의 노동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북한인력을 채용 또는 해고하도록 한 것,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개입허용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이는 중국·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83) 중국에 진출한 합영기업은 임금 외에 고율의 복리후생비를 부담(임금의 31% 수준)하게 되어 있다.

84)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p. 88~89 참조.

북한이 아직 자본주의시장원리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⁸⁵⁾

3. 기업의 외화 및 토지 이용

가. 외화이용

북한은 중국, 베트남 등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국가계획에 의해 외화수급을 관리하는 외화집중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외화관리법」 제4조). 이에 따라 북한은 ① 외화현금의 유통 금지(「외화관리법」 제6조), ② 외화거래, 저금, 예금, 저당 등의 외국환관련 거래은행의 제한(「외화관리법」 제5조), ③ 외화관리기관에 의한 환율결정(「외화관리법」 제7조), ④ 외화관리기관의 결제통화지정(「외화관리법」 제8조)을 외환관리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다.

북한 내에서는 외화현금의 유통이 금지되는 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환교환소에서 북한원과 바꾸어 써야 한다(「외화관리법」 제6조,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9조 1문 및 2문). 따라서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하에 무역은행이나 기타 북한은행에 북한원계좌, 외화원계좌,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만 외화와 북한원의 거래를 할 수 있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20조).⁸⁶⁾

85) 内外通信,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불구, 투자수용한계 드러내,” pp. A3~A4.

86) 북한원계좌에는 북한영역 안에서 경제활동과정에서 취득한 북한원화를 넣고, 외화원계좌에는 전환성 외화를 북한원으로 전환한 돈을 넣으며, 외화계좌에는 지정된 외화를 화폐별로 넣을 수 있다.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의 조달은 ① 초기출자시 불입된 외화계정, ② 수출대금, ③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차입 등 기업자체의 계획에 의해 조달하고, 경영에 필요한 북한원은 이 계정한도 내에서 교환하며, 그 적용환율은 북한의 외환관리당국이 정하는 공식환율에 의한다.

북한은 만성적으로 외화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이므로 외화관리제도 전반에 걸쳐서 외화사용 및 반출에 대해 엄격한 제약을 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획기적인 외환관리제도 개방을 단행하였고, 베트남은 외환수지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⁸⁷⁾ 그러나 북한은 외환수지균형 의무를 강제할 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경직된 외환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외환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 내수판매에 의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북한원화는 북한원계좌에 예치하며 북한원계좌의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6조). 즉 내수판매로 얻은 북한원화는 제도적으로 교환성통화로의 교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내수판매로 얻은 이윤은 「외화관리법」 제27조 및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로 얻은 이윤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 국외송금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⁸⁸⁾ 따라서 자체의 외화수입이 부족한

87) 중국은 1993년 12월 29일 「외환관리체제의 진일보개혁에 관한 중국인민은행공고」를 통해 인민폐 단일환율제 채택과 외국환은행에서 외화의 자유매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환율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1994년 2월호, pp. 27~28. 베트남도 1993년 4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시행세칙」 제62조에서 외국투자기업이 외화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의 심사에 의해 외국투자기업의 보유 베트남화를 외화로 바꾸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부족을 보충하도록 개선하였다.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p. 84~85 참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외화부족으로 경영활동에 많은 애로가 생길 수 밖에 없다.⁸⁸⁾ 또한 북한의 심각한 외화부족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당국이 극단적으로 외화예금의 인출을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⁹⁰⁾

따라서 외국투자자나 남한기업들은 외화부족을 피하기 위해 내수 판매보다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 만일 외국시장에서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실패할 경우 결국 많은 외화를 북한측에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북투자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북한의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수급계획에 따라 계획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즉 복수환율제도 하에서 시장환율이 아닌 외화관리당국이 임의로 결정하는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⁹¹⁾ 그리고 공정환율이나 무역환율은 모두 현실과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⁹²⁾ 결국 「외화관리법」

88) 「외화관리법」 제27조는 “외국투자자는 북한영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 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에서 북한영역 안에서 취득한 북한화폐는 외화로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화로 얻은 이윤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외송금이 불가능하다.

89) 박성희, “북한의 외화관리제도,” 『북한뉴스레터』, 1996년 10월호, p. 15;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 하여-,” p. 50.

90)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2.

91) 북한에는 공정환율(공식환율비율), 무역환율, 비무역환율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申雄湜·安成祚,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법규-』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8), p. 236.

92) 중국은 1994년 1월부터 시장기능에 맡기는 단일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정부가 부정기적으로 환율을 결정하여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차이가 심하였으나, 1988년 이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현재는 공식환율과 실제환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과 「외환관리법 시행규정」의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운용에 있어서 북한원화가 과대평가된 환율이 적용됨으로써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들에게도 환율편차에 따른 불이익을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합영법 시행규정」에서는 출자시 외화자산의 북한원 환산시 「무역은행이 발표하는 환율」을 적용(제39조 3문)하며, 합영기업의 회계처리(경영계산)시 외화에 대한 북한원 환산시 적용환율도 역시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교환 및 결제시세」로 한다(제97조 3문)고 규정하고 있다. 「합작법 시행규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합작법 시행규정」 제44조 2문).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에서는 “외국인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해당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율로 계산된 북한원을 겹쓰기로 표시하여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43조 2문)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체로 외국투자기업의 출자, 경영상의 외화수입·지출, 이윤의 송금 등에 무역환율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식적으로 무역환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외국투자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정한 환율과 무역환율을 병행적용함으로써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⁹³⁾

넷째, 북한의 외화통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심한 편이다. 외국투자기업은 무역은행 또는 외화관리기관이 승인한 은행에 외화구좌를 설치하고 모든 외화거래는 이 구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7조 및 제11조 참조), 연간 외화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 외화수지보고표 등을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41조). 이처럼 외국투자기업은

93)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p. 83~84 참조.

북한의 강력한 외화집중관리체제의 통제를 받으면서 필요한 외화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⁹⁴⁾

다섯째, 임의적인 환율결정으로 인해 대미(對美) 달러환율은 거의 고정적이어서 달러표시 국제거래시 환위험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 가치가 변동될 경우 엔화 등 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한 환율이 변동하게 되어 비(非)달러표시 국제거래시 환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있다.⁹⁵⁾

여섯째, 「외화관리법」 제29조~제31조와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57조~제61조에서는 「외화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화관리법」 제29조에서는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벌금의 범위에 관해서는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에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은행거래중지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처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57조 5호는 “이 밖의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 조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따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벌금형 부과와 관련하여 유추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외화관리법」 제31조와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61조에서 「외화관리법」 또는 이 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때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94)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p. 50.

95) 박성희, “북한의 외화관리제도,” 「북한뉴스레터」, 1996년 10월호, p. 15.

여기서 행정적·형사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규정이 애매하다. 책임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⁹⁶⁾

일곱째, 외국인 종업원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만 해외로 송금 또는 직접 휴대하고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60%를 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55조). 이와 관련, 중국의 경우에는 합법적 수입의 50%까지 송금할 수 있으며, 국가외화관리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규정상으로는 북한이 좀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사정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송금 또는 휴대반출이 허용될지는 극히 의문시된다. 또 북한에서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권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외국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덟째,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6조에서는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를 위한 조선원, 외화원, 외화돈자리의 잔고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해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예금관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도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외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만성적인 외화부족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하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나, 외화거래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많은

96)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2;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p. 186~187.

제약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⁹⁷⁾ 특히 내수판매로 얻은 판매대금의 외화로의 교환을 법·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투자환경의 평가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이 외화관리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점차 경직성을 탈피해 나가야 한다.

나. 토지이용

북한은 1993년 10월 「토지임대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준거법을 마련하였다. 「토지임대법」은 토지소유권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분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를 양도(매매, 재임대, 상속, 증여) 및 저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중국의 토지이용제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⁹⁸⁾ 그리하여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① 외국측이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받아 토지이용권을 얻는 방식, ② 토지이용권을 가진 토지임차자로부터 양도받는 방식,

97) 위의 책, pp. 176~177 참조.

98) 중국에서도 토지국유제도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집체기업만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고, 단체·기업·개인에게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될 뿐이다. 중국은 토지사용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혁·개방 이후 「토지관리법」(1986 제정, 1988 개정), 「토지관리법 세칙」(1991),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재양도 잠정조례」(1990), 「外商 토지투자와 개발에 관한 잠정조례」(1990) 등의 법령을 정비해 왔다.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p. 61~62 참조. 중국의 토지제도 개혁과 외자기업의 토지이용제도에 관해서는 최수용,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참조.

③ 북한측 합영합작당사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대별된다.⁹⁹⁾ 다만 중국이 내국인 기업·단체·개인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권을 재산권으로 행사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내국인의 토지이용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외국과의 합영 및 합작에 참여하는 당사자로 제한함으로써 대내적 개혁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토지임대법」에는 법규의 불명확성 등 내재적인 문제점 외에 중국의 법령과 비교할 때 불리한 조항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할 때 북한은 명의변경 등록을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하는 이외에도 토지임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토지임대법」 제18조 2호 및 3호). 따라서 토지이용권의 임의적인 양도가 불가능하다. 또 양도받을 경우에도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토지임대법」 제14조, 제17조, 제39조 참조).¹⁰⁰⁾

둘째,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할 경우 토지임대기관의 우선구매권을 인정하고 있다(「토지임대법」 제19조, 「토지임대법」 제51조 1문). 이는 외국투자기업이나 남한기업이 토지임대기관의 영향력에 비추어 토지이용권의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의 책정에 있어서 「토지임대법 시행규정」에서는 기준 임대료와 사용료를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토지임대법시행규정」 제86조 및 제92조 참조)고만 되어 있어 기준

99) 申雄湜·安成祚,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법규-, pp. 312~336 참조.

100)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1.

임대료와 사용료 책정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조항들은 특히 남한 기업이 나진·선봉지역에 100% 단독출자하는 경우에 우리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다.

넷째, 전기, 통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비를 토지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토지임대료에 포함시키고 있어(「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제88조 2문 참조), 토지임대료의 과다책정이 예상되고 있다.¹⁰¹⁾ 즉 이미 개발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개발에 소요된 제 비용(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 등에 지출된 비용)인 토지개발비가 포함된다(「토지임대법」 제29조). 이에 비해 베트남에는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없으며, 토지임대료를 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회에 일괄납부하면 사업허가기간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¹⁰²⁾

다섯째, 토지이용권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자동반환되며, 반환시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과 부착물을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40년 이상 장기임차의 경우 기간만료 10년 이내에 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 수 있다(「토지임대법」 제34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토지이용권의 반환시 투자한 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한 것은 토지국유제의 원칙을 가능한 한 견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북한은 이같은 건축물과 부착물의 무상반환 뿐만 아니라

101) 襄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문제점과 대책 - 국내기업의 북한진출과 관련하여,” 「북한연구」, 제6권 1호(1995), p. 120.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토지 관련 비용에는 토지임대료, 토지개발비, 토지사용료, 건물임대료, 위탁건설비 등이 있다. 토지임대료라 함은 ‘토지이용권의 값’(「토지임대법」 제28조 2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측이 직접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토지개발을 하여 공장이나 기업을 짓는 경우에는 토지임대료에 토지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102)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 66 참조.

임대기간 만료로 인해 토지를 반환할 때 임대기관의 요구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이 건축물과 설비부대시설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토지임대법」 제37조 참조). 중국의 경우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무상반환한다는 점에서는 북한과 차이가 없으나, 자기비용에 의한 철거규정은 없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임대 관련 규정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다. 특히 임대기간이 짧은 경우 외국투자가가 시설투자의 감가상각비와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투자원본을 회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다. 한편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라는 규정에는 철거 및 토지정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의 자의적 판단 및 적용의 소지가 남아 있다.¹⁰³⁾

여섯째, 「토지임대법」은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임대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내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며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해 준다”(「토지임대법」 제38조)고 규정하여 소위 토지이용권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토지이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여전히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외국투자기업의 생산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¹⁰⁴⁾

103)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1.

104) 위의 글.

4. 기업에 대한 조세

북한은 1993년 1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1994년 2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를 전면 재정비하였다.¹⁰⁵⁾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과 동 시행규정에서는 기업소득세 및 감면사유, 개인소득세, 재투자시 기업소득세 감면, 송금세 등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유치가 활발한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을 의식하여 외자유치 관련 세금법령에서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다소 유리한 조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⁶⁾ 북한의 세제를 중국·베트남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외자유치를 겨냥하여 양호한 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이 눈에 띈다.

첫째, 북한은 과세대상 소득에 있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6조), 이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북한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의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재산세는 북한내에 있는 외국인 재산에 대해, 상속세는 북한영역 안에 있는 재산상속과 '북한

1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pp. 61~71; 申雄湜·安成祚,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법규-」, pp. 213~234. 이러한 법령 제정에 따라 1985년에 제정된 「합영회사 소득세법」과 「외국인 소득세법」은 자동폐기되었다.

106) 북한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이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외화를 북한 영역 밖으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반지역, 경제특구 구별 없이 외화의 국외 송금시 10%의 송금세가 부과되며, 베트남은 일반지역에서는 5~10%, 수출가공구에서는 5%의 송금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송금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 101.

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북한밖의 재산상속'에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 구분기준을 1년으로 하고 있지만, 거주목적, 거주기한 등 과세원천소득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¹⁰⁷⁾ 따라서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준을 설정하여 세무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세금법령의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107)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3.

<표2> 북한·중국·베트남의 세제비교

구분	북한	중국	베트남
기업 소득세	·일반지역 25% ·자유경제무역지대 14% ·투자장려부문 10%	·일반지역 33% ·경제특구 15% ·투자장려부문 15%	·일반지역 25% ·수출가공구 [제조업 10% 서비스업 15%] ·투자장려부문 10~20%
소득세 감면	·장려부문 및 지대내 제조업 ¹⁾ : 3년 면제 후 2년 50% 감면 ·지대내 서비스업 ¹⁾ : 1년 면제 후 2년 50% 감면 ·지대내 총투자액 6천만 원 이상되는 하부구조건 설부문: 4년 면제 후 3년 50% 감면	·기본: 10년 이상 운영 제조업: 2년 면제 후 3년 50% 감면 ·70% 이상 수출기업: 기본+50%감면계속 ·선진기술기업: 기본+3 년 50%감면 ·농업, 임업, 목축업: 기본+10년 10~15% 감면 ·특구내 출자액 500만 달러 이상의 10년 이 상 운영서비스업: 1년 면제 후 2년 50% 감면	·기본: 1년 면제 후 2년 50% 감면 ·투자장려부문: 2~4 년 면제 후 3~4년 50% 감면 ·수출가공구 제조업 4년면제 서비스업 2년면제
개인 소득세	·월2천원(약930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4~20%	·월800원(약95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5~45%	·월500만동(약500 달러)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10~ 50%
재투자 혜택	·재투자하여 5년 이상 운 영시 소득세액 50% 환급 (하부구조건설부문은 100%)	·재투자하여 5년이상 운영시 소득세 40%환 급(첨단기술 및 수출 기업은 100%)	·재투자하여 3년이상 운영시 소득세 100% 환급
송금세	·일반지역: 없음 (세관신고의무) ·자유경제무역지대: 없음 (세관신고의무 없음)	·일반지역: 10% ·경제특구: 10%	·일반지역: 5~10% ·수출가공구: 5%

주 1): 10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 201.

둘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4조에서는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의 재정 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고 규정하여 신고납부제와 공제납부제(원천징수제)를 병용하고 있다.¹⁰⁸⁾ 그러나 신고납부제와 원천징수제를 병행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우선 북한기업이나 은행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거래하여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형태로 수익금을 지불할 경우 북한기업이나 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¹⁰⁹⁾ 만일 시행한다고 해도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북한기업과 세무당국의 이에 대한 제도적 적응이 매우 미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소득은 소득원천이 정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격상 납세연도에 대한 규정이 어렵다. 만일 기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를 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분기별·연간 재정부기결산과 연간 확정납부시의 회계처리 및 납부방법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보다 상세한 신고납부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세액의 산정 등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신고납부와 원천징수의 어느 한 제도를 취하지 않고 이를 동시에 병용한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¹¹⁰⁾

108) 중국의 경우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납부는 원천징수제로 통일되어 있다. 「징세관리법」에서는 세무당국의 권한범위와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의무이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 원천징수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09) 북한의 기업관리제도와 기업예산제도로 볼 때 내국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로열티 등은 없고 이자소득만이 있을 것이데, 이에 대해 원천징수하는지는 불분명하다.

110) 개인소득세 중에서 기업소득세의 기타 소득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은 배당

셋째, 과세대상의 범위를 보면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서는 기업소득세의 경우 중국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중국, 베트남에 비해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경우 180일 이상 북한에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7조).¹¹¹⁾ 반면에 중국에서는 1년 이상 5년 이내 거주자로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5년 초과 거주자는 제6년도부터 모든 국외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¹¹²⁾ 베트남의 경우는 연간 183일 이상 현지 체류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다.¹¹³⁾

넷째, 상속세관련 조항은 특히 거주 외국인이 북한영역 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총련계 북송동포 및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인 처 중 북한국적 미취득자들이 재일(在日)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는 재산상속분을 북한으로 환수하기

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등이다. 이 가운데 원천징수되는 것은 이자소득이며, 공업소유권·기술비결·저작권 제공소득은 원천징수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재로서 기업소득세의 기타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 부문은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 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p. 205~206.

- 111)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 97;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p. 47.
- 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증보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0), p. 525.
- 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증보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3), p. 387.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는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이 과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일시체류 외국인의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¹¹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7조에서는 북한과 세금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중국(1994.3), 베트남(1994.5)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한 투자기업들은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으나 북한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이중과세의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다섯째, 북한의 세금제도는 단일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으나, 투자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거래세, 상속세를 비롯하여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 등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 구체성을 결여한 곳도 있다. 예컨대 거래세 세율표에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으로 나누어 세율이 표시되어 있으나 품목구분이 구체적이지 않다. 또 세율도 식료품의 경우 3~20%와 같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품목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14)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3; 채성호,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p. 48.

북한의 관세는 일반지역의 경우 ①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②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해서 면제된다(「세관법」 제34조 4호 및 5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즉 ① 외국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우, ②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관세가 적용된다(「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5조 및 제26조 참조). 한편 북한은 1995년 6월 「세관법」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맞는 세관통과질서와 특혜관세제도를 철저히 수립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을 채택하였다(「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제1조).

중국과 베트남의 관세면제 혜택은 일반지역과 경제특구의 구별 없이 북한의 일반지역과 대동소이한 조건이다. 중국은 ① 외국측의 출자분으로 수입하는 기계, 설비, 부품, 부속품, ②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포장재료, ③ 외자기업 상품의 국외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생산설비, 부품 등 자본재 수입세는 면제이나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의 수입은 임시수입세 과세대상이 되며 수출상품이 된 후 각각에 대해 환급한다.¹¹⁵⁾

115)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 시행세칙」(1994.3.16) 제76조.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p. 98~99 참조.

5. 보험 및 산업재산권제도

가. 보험의 이용 및 관련제도

북한의 「보험법」과 외자유치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북한 보험의 이용을 명시하고 있어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투자자산의 위험 분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보험관련 규정들에 는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합영법」 제31조와 동 시행규정 제114조에서는 “합영기업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시행규정에서는 북한영역안에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기업법」 제23조와 동 시행규정 제5조에서도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보험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보험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보험법」 제3조 1문). 이처럼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서는 합영기업이나 외국인기업 형태로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북한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경영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¹¹⁶⁾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내 보험사가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이나 북한 현지의 외국기업을 상대로 직접 보험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겠다.¹¹⁷⁾

116)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p. 46. 실제로 현재 남포에서 삼천리총회사와 합영사업을 하고 있는 (주)대우의 경우에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보험은 모두 북한에서 처리하고 있다.

117) 그러나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의 경우 건설공사가 북한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보험은 주시공자인 한진측에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경수로 건설공사와

그러나 북한에는 아직 자본주의방식의 보험개념과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또 북한에 민영보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수요도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외화난으로 보험재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위험담보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북한의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나마 외국인기업의 경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에서 다소의 융통성이 보이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¹¹⁸⁾

둘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산,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고(「외국인투자법」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 및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북한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3조)

관련된 보험은 국내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북한영역 내의 물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건의 성격에 따라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보험가입주체가 결정되고 있어 현재에도 남북한간에 제한적이지만 보험거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申東昊·安哲京·趙惠媛, 「南北經協 增大 및 統一에 對備한 保險 産業 對應方案 研究 -독일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保險開發院·保險研究所, 1997), pp. 103~104.

118)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조에서는 「원칙적으로」(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어 북한보험 이외의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점은 다른 법규의 규정방식과는 차이가 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보험법」 제6조에서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영역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보험에 들려는 경우 공화국영역에 있는 국가보험기관 또는 외국투자보험기업이 하는 보험에 들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진출한 외국투자보험기업의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격하게 북한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보험에의 가입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효성을 갖는 규정인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영법 시행규정」에서도 「합영법」 제3조에 의거하여 “합영은 과학기술부문과 전자, 자동화,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재, 제약, 화학 공업부문, 건설, 운수, 금융, 관광, 봉사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조직할 수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8조)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기업법」에서도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기업을 창설할 수 있고(「외국인기업법」 제3조), 외국인기업은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하에 북한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외국인기업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법」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외국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보험법」 제3조 2문 및 3문)고 규정하고 있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국내 보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남한의 보험회사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여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외에도 지사, 대리점 설치 나아가 북한 또는 제3국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작투자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이 보험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대외경제개방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도입을 순조롭게 하려는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¹¹⁹⁾ 「보험법」에 의하면 여전히 남한기업에 의한 보험업 진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한정되고 있다.¹²⁰⁾ 외국투자가

119) 북한의 보험관련 법과 제도에 관해서는 보험감독원, 「북한 보험제도」(서울: 보험감독원, 1997), pp. 108~116 참조.

120)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해 국내 보험사가 직접 외국투자보험기업으로 인가를 받아 진출할 경우 「보험법」 제6조에 의해 지대내 물건에 대한 보험인수가 가능하다. 한편 북한의 「해운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보험기관이 보험

의 경우에는 외자유치법령의 전체 문맥상 자유경제무역지대 뿐만 아니라 전 북한지역에서 보험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¹²¹⁾ 이러한 차별은 북한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현재 「보험법」상의 관계규정만으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남한기업이나 외국투자자가 북한에 진출하여 보험사업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외국투자은행법」 및 동 시행규정과 마찬가지로 보험관련기업의 경우에도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투자의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법」 제13조에서는 “외국투자보험기업(남한투자보험기업)은 자기가 받은 보험료의 30% 이상을 정해진 보험기관에 재보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 진출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사업에 규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약에서 부담하게 된 책임을 다시 다른 나라 보험기관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은 재보험에 대해서는 외국보험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재보험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申東昊·安哲京·趙惠媛, 「南北經協 增大 및 統一에 對備한 保險産業 對應方案 研究 -독일모델을 중심으로-, p. 104.

- 121) 그러나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보험사업을 하는 실적이 부진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정치·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다. 비즈니스 전개, 특히 금융업진출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의 안정이 필수적인 조건인데, 공식적인 국가 최고지도자의 권력승계 지연,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경제부진은 외국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둘째, 보험시장규모의 한계이다. 나진·선봉지역의 보험대상은 기본적으로 동 지대에 진출하는 외국인기업 또는 현지기업 정도인데 외국인 진출실적이 미미하고 현지기업들도 대형기업이 없어 시장진출에 따른 수익성 제고가 어렵다. 셋째, 투자금 운용대상의 미비이다. 보험회사의 자산은 그 가치가 보전·증식되어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이행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를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조은호, “북한의 보험제도,” 「북한뉴스레터」, 1997년 4월호, p. 13.

넷째, 「보험법」 제33조에서는 “생명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몰수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보험지급 거절사유가 분명할 때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생명보험과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질러 반사회적인 분자로 낙인찍힐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전자라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는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보험법」 제45조에서는 「보험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벌금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벌금규정은 자의적 적용 내지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 산업재산권 및 경영비밀의 보호

「외국인투자법」 제12조, 「합영법」 제11조, 「합영법 시행규정」 제31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37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8조 등에서는 발명권,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등 산업재산권의 출자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규정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래서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노무관리, 회계제도와 더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¹²²⁾

과거 북한은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 「창의고안에 관한 상금지규정」(1959.9.2 내각 결정)과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1967.10.5 내각 결정), 「과학기술성과의 심의·등록 및 도입에 관한 규정」

122)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 215.

(1987.1.30 정무원 결정, 1991.9.3 개정) 등을 제정한 바 있었다. 그 후 1989년 1월에는 「과학기술법」을 새로이 마련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다.¹²³⁾

북한은 1986년 6월 10일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외형상 제도적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내 특허나 상표의 출원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성과의 심의·등록 및 도입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법」 등 북한의 관계 법령은 발명 및 창고고안에 대한 이용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발명당사자에게는 금전적 보상과 명예의 부여를 규정하는 등 파리협약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아직 북한에서는 국제기술도입계약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업소유권의 이전 또는 허가, 노하우, 기술용역 등의 국제계약과 관련 설비의 수입 등에 있어서 비밀유지의 문제가 있다.¹²⁴⁾

또한 남북한이 모두 파리협약에 가입해 있고 가입국간에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내 특허나 상표의 출원등록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의 특허나 상표의 출원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남한기업이 북한에 합작투자를 하거나 기타 산업재산권 이용관계를 맺고자 할 경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¹²⁵⁾

한편 북한이 마련한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에서는 합영기업이 새롭게 입수한 기술 및 금융시장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123) 「과학기술성과의 심의·등록 및 도입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北韓法制資料 제2호 (서울: 법제처, 1992), pp. 33~40 참조.

124)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 216.

125) 중국과 우리나라가 모두 파리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국적의 특허·상표출원을 받아주지 않다가 경제교류가 본격화된 1989년부터 우리 국적의 특허·상표의 출원을 받아주었다. 위의 책;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p. 40.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위 표준양식에는 「출자한 생산특허와 기술비밀은 합영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북한측 합영당사자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 불평등한 계약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하겠다.¹²⁶⁾

지금 북한이 공업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하위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법」 제21조에서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절차적 집행력이 미흡하다고 하겠다.¹²⁷⁾

6. 분쟁해결제도

외자유치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령으로는 ① 외자유치법령의 분쟁해결조항, ② 「민사소송법」,¹²⁸⁾ ③ 「중재법」, ④ 「중재재판규정」 등이 있다. 「중재법」과 「중재재판규정」은 아직까지 공개되어

126) 全洪澤·曹東昊, “남북한 투자협력의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남북한 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개발계획」,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992.6.12, pp. 35~36.

127)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4.

128) 분쟁해결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은 1978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제정되었다. 동법의 자세한 내용분석은 북한연구소, 「북한의 민사소송법 개요」 (서울: 북한연구소, 1992) 참조.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분쟁해결조항과 북한의 중재제도에 관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분쟁해결 방식과 관련하여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외국인투자법」 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합영법」 제47조 1문 및 2문 전단, 「합영법 시행규정」 제158조 1문 및 2문).¹²⁹⁾ 분쟁사건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합영법」 제47조 2문 후단, 「합영법 시행규정」 제158조 3문).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분쟁사건)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합작법」 제21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132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외국인기업법」 제31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9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

129) 이러한 조항에 비추어 북한에서는 분쟁의 개념을 ‘회사운영과정에서의 의견상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8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일차적으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2조),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분쟁사건은 북한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3조). 이 외에도 「토지임대법」(법 제41조 및 제42조, 시행규정 제108조 및 제109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법 제56조 및 제57조, 시행규정 제78조 및 제79조), 「세관법」(제50조 및 제51조), 「외국투자은행법」(법 제32조, 시행규정 제68조), 「보험법」(제47조), 「공증법」(제32조 내지 제35조), 「대외경제계약법」(제42조) 등 외자유치관련 법들과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제48조), 「외국기술도입규정」(제20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조선원 대부규정」(제39조) 등 여러 하위규정들에서도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외자유치법령에 명시된 대북투자 관련 분쟁 해결은 첫째, 1차적으로 협의의 방법에 의해 해결하고, 둘째,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심의·해결하며, 셋째, 관련 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제3국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¹³⁰⁾ 북한의 분쟁해결관련 법령이 아직 완비된

130) 투자를 둘러싼 분쟁은 일반적으로 분쟁주체에 따라 크게 합작투자계약의 당사자간의 분쟁, 합작투자계약의 당사자와 투자유치국 또는 투자유치국의 국가기관간의 분쟁, 합작투자계약 당사자가 속한 국가간의 분쟁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분쟁은 해결되는 방법에 따라서 우호적 협의, 조정, 관할국의 중재, 사법적 재판, 제3국 중재기구 또는 국제중재기구에 의한 중재로 나누어진다. 諸成鎬, 「對北投資 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研究報告書 93-09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148~178 참조. 일반적으로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1차적 분쟁해결수단이라 한다면, 중재 또는 재판에 의한 분쟁

상태가 아니며 기존의 법령도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문제점에 대한 연구·분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는 분쟁해결관련 법령에서 나타난 몇가지 대표적인 문제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법」은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합의를 조건으로 제3국 중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제3국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북한내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외국인투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불일치 내지 통일성의 결여가 나타나고 있다.¹³¹⁾ 특히 합영방식으로 설립되는 은행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은행법」 제32조에서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을 명시하고 있을 뿐인데 비해 「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 제68조에서는 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 즉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3국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의 해결을 인정하고 있다. 법의 규정을 신뢰해야 할지 아니면 시행규정의 내용을 믿어야 할지 불투명하다.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불일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이 법에 따라 제정된 하위규정들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3조는 제3국 중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30조, 「자유무역항규정」 제28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제25조, 「자유경

해결은 2차적 분쟁해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31) 統·院, 「月刊 北韓動向」, 統分 92-12-59 (서울: 統·院, 1992), pp. 116~117; 三星經濟研究所, 「1992년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p. 44 참조.

제무역지대 중계집입자대리업무규정」 제28조,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 제6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조선원 대부규정」 제39조 등에서는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³²⁾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정」 제31조에서는 제3국 중재기관 외에 제3국 재판기관에 의한 해결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대외경제계약법」 제42조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의,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제3국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을 열거하고 있어 북한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외자유치법령상의 분쟁해결조항의 통일성 결여, 불일관성을 잘 말해주는 것들이다.

둘째, 합병, 합작, 외국인단독투자 중 합병의 경우에만 제3국 중재를 인정하고 있다.¹³³⁾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등 공신력 있는 국제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공정한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30조에서는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협의만을 명시하고 있어 북한내에서의 중재 및 재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¹³⁴⁾ 나아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132) 그러나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제63조,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43조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35조에서는 제3국 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133) 「외국인투자법」의 하위규정 중에서는 「외국기술도입규정」 제20조와 「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 제68조 등만이 제3국 중재를 인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한편 외자유치관련 법에서 제3국 중재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대외경제계약법」 제42조, 「토지임대법」 제42조와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제109조, 「보험법」 제47조 등을 들 수 있다.

관한 하위규정 중에서는 위반시 벌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 내지 형사적 제재만을 부과한다는 조항만 두고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아예 두지 않거나 또는 신소와 청원만을 인정하고 중재나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은데,¹³⁵⁾ 이것도 역시 외자유치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외자유치법령에서는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과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병렬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분쟁당사자가 양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한 해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중재기관은 재판소의 중재부¹³⁶⁾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외자유치에 따른 분쟁을 북한의 일반 중재기관¹³⁷⁾에서 처리

134) 이 외에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은 제3국 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의 해당한 절차에 따른 해결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은 신소와 청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분쟁해결방법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투자기업 부가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 부가계산규정」은 행정적 내지 형사적 제재만을 명시할 뿐 신소·청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35) 행정적 내지 형사적 제재만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경제통행검사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기업소관리운영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가내편의봉사업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통계규정」 등이 있고, 신소와 청원만을 명시한 규정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중재무역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국경검역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 등이 있다.

136) 특별히 중재를 위하여 북한의 중앙재판소에는 중재부를 두어서 재결원 수 명이 중재재판을 담당하며, 도재판소에도 중재부에 1명의 재결원을 두고 있다.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45~1982」(서울: 北韓研究所, 1983), pp. 258~259.

137) “사회주의하에서의 중재기관은 기관·기업소·단체들사이에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된 경제활동을 검열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률의 준수를 통제하는 특수한 사법기관”이다. 이 중재기관은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

하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중재기관이 담당하는 기본업무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고,¹³⁸⁾ 또한 이러한 기관이 투자분쟁의 해결에 익숙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실 외자유치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기존의 중재법과는 다른 새로운 중재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별도의 중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투자분쟁 전문의 중재기관이 설치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앞으로 외자유치 실적이 증가하고 그 규모도 늘어날 경우 투자분쟁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재기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그러한 투자분쟁 중재기관의 조직·구성·중재절차 등에 관한 입법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규율과 준수에 대한 통제를 고유한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의 중재기관이 수행하는 법적 통제활동에는 중재와 검열의 2가지 형식이 있다. 중재는 중재기관의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경제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중재는 취급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 판단과 해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재판기관의 재판활동과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다. 이에 비해 검열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약을 규율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체결 및 계약리행 정형, 재결 및 제의 집행 성형을 조사하고 비법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을 시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활동'을 말한다. 중재기관은 검열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적 검열·감독기관과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며, 그의 활동은 재정기관의 재정·검열처럼 철저히 행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436~439. 중재기관의 계약체결 강제에 관해서는 김재교, "새로운 자재공급체계하에서 계약제도의 특성과 그 역할,"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론문집)」,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4), p. 159 참조.

- 138)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중재는 행정재판적(行政裁判的)인 성격을 띠고 있고, 중재기관도 중재 이외에 검열을 행함으로써 계약 및 계약규율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경제관리와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중재기관이 당의 정책과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중재제도에 관해서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중재법」, 법학부용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년대미상), pp. 1~136 참조.

북한당국이 그러한 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과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중재기관에서의 해당 중재절차¹³⁹⁾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즉 외자유치법령상의 중재절차는 기존 중재기관에 의한 일반적 중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무역중재인지가 여전히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해석상 외자유치법령상의 중재기관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소속 「무역중재위원회」를 지칭하며, 중재는 국제무역중재¹⁴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¹⁴¹⁾

하지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소속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역이지 투자가 아니다.¹⁴²⁾ 투자분쟁

139) 북한에서 중재란 '사회주의국가의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맺고 그것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그 밖의 계산상의 분쟁을 심의하여 해결하는 해당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현대조선말 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884. 일찍이 김일성은 중재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金日成·金正日, 「社會主義法務生活について」(東京: 千二千エ思想國際研究所, 1985), p. 79.

140) 「국제무역중재」는 '무역계약의 리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재판형식으로서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재결원을 선정하여 해결하는 법적 수단'을 말한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28. 1956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소속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무역중재위원회가 "무역에 관하여 계약상 발생하는 공화국 무역단체와 외국 무역단체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제1조), 관할분쟁의 범위를 '외국과의 상품구매계약 또는 상품판매계약 및 위탁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배상청구에 관한 분쟁'과 '상기 계약에 의한 상품의 수송, 보험, 보관 및 기타 계약 진행상의 업무에 관한 분쟁'에 국한시키고 있다(제2조). 이처럼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무역중재위원회가 국제무역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바, 용어상으로만 중재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을 뿐 국제무역중재는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41) 諸成鎬, 「對北投資 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pp. 23~27 참조.

142) 이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입각하여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소속 중재위원회에 있어서의 사건처리규정」(년도 미상)과 함께 1989년

의 해결에 이 기구를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그러한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 1985년의 「합영법 시행세칙」에서는 무역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제68조 및 제71조 참조)하고 있었는데 반해, 1992년의 「합영법 시행세칙」(제98조 및 제99조)이나 현행 「합영법 시행규정」(제158조)은 물론 각종 외자유치법령에서는 단순히 중재기관, 그리고 중재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고 (국제)무역중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외자유치법령은 입법적 형식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후퇴한 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1992년의 「합영법 시행세칙」 제100조에서는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한다”고 하여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법규를 명시하였으나, 현행 「합영법 시행규정」에서는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¹⁴³⁾ 또 동일한 「합영법 시행세칙」 제101조에서는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재사건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 원고와 피고는 중재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현행 외자유치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입법적 형식에 있어서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월 4일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결정 제2호로 「중재심문규칙」(Rules of Hearing)을 제정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국가중재재판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법원행정처, 1995), pp. 137~138. 「중재심문규칙」에 관해서는 최중고, 「北韓法」, (서울: 博英社, 1993), pp. 262~273 참조.

143) 그러나 지금도 외자유치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중재와 같이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 「외국기술도입규정」 제20조 2문에서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하거나 …”라고 규정하여 재판에서의 준거법을 「민사소송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남한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분쟁해결의 방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중재법」의 정확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의 입장에서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현재 대북투자에 관련된 분쟁의 중재에 그대로 적용되기가 곤란하다. 즉 무역중재위원회는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따른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방안은 북한의 재판기관과 제3국에서의 중재에 한정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 좀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서 필요시 북한당국에 대해 입법보완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외국인투자법」 내지 「합영법」의 규정에 따라 제3국 중재를 한다고 해도 이의 북한내 집행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북한은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 또는 ICSID협약) 비가입국이므로 국제중재기구에 의한 중재의 효력을 인정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의 중재를 한다고 해도 주권면제를 주장함으로써 이의 집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¹⁴⁴⁾

일곱째, 국제무역 또는 해외투자에 따른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자국의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중국적인 판결이나 판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은 정의구현을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사법제

144)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14; 諸成鎬, 「對北投資 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pp. 155~160 참조.

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재판기관에서 북한법에 따라 투자분쟁을 심리·해결할 경우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¹⁴⁵⁾ 만일 북한이 그들의 재판기관에서 분쟁 해결을 강요한다면 남한기업은 물론 외국투자자의 대북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7. 기타

위에서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상의 주요 문제점에 관해 살펴 보았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지적하기로 한다.

가. 국유화 및 보상규정의 불충분

「외국인투자법」은 제19조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법」은 원칙적으로 국유화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제19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화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국유화 금지규정만으로 대북투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불가

145) 방계문, “공화국 법은 우리 당 정책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공화국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론문집), pp. 2, 16, 24 참조.

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유화 또는 수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자본유치국인 북한이 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대북투자의 경우 자의적인 법 적용 등 투자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나 남한기업은 각자 소속국 정부와의 협의를 정부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의 보상규정도 매우 추상적이다. 즉 「외국인투자법」상 「해당한 보상」이란 개념은 일반국제법상 인정되는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 또는 충분·신속·유효한 보상(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인지 아니면 상당한 보상(reasonable compensation)인지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¹⁴⁶⁾ 사실 이러한 용어들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불확정개념이기는 마찬가지이다.¹⁴⁷⁾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북한은 외국투자자의 재산보호, 국유화사유 및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있는 단행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146)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 또는 충분·신속·유효한 보상(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상당한 보상을 주장한다. 이 외에도 보상의 개념에는 완전보상(full compensation), 부분보상(partial compensation), 한정적 보상 등이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李仲範, 「外資國有化論」(서울: 潮閣, 1975), pp. 110~120 참조.

147)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pp. 41, 54~56 참조.

나. 기업 종사자의 출입국관리 및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운영

(1) 외국인의 출입국과 북한체류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의거하여 1993년 11월 29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을, 그리고 1994년 6월 14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을 각각 제정하여 외국인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체류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수지역인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인들이 출입하고 체류·거주하는 규정일 뿐이다. 북한의 다른 일반지역에 대한 출입국과 체류·거주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이 소상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는 바, 이에 관한 법규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사증제도는 일반적인 무사증제도와는 달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이 지대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휴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당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대 당국 출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6조). 또한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소지해야 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7조). 이 밖에 북한의 관광증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 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자유경제무역지

대 외국인출입규정」 제10조 1문). 여기서 관광증은 다른 나라의 북한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발행하는 것(「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10조 2문)으로 사실상 사증과 다를 바 없다.¹⁴⁸⁾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는 방법은 초청장에 의한 출입과 관광증에 의한 출입으로 나누어져 있다.¹⁴⁹⁾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여러 차례 출입을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30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多回)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9조). 이는 복수사증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출입국절차의 부분적 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있는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남한기업이나 외국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¹⁵⁰⁾

이처럼 북한당국은 초청장 발급과정에서의 개입과 출입국절차와 관련, 초청장 소지 여부의 심사를 통해 외국인의 출입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에서는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 통행증을 분실했거나 해당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19조 1문)고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의적 적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외국인과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체류는 단기체류(90일까지), 장기체류(90일 이상 1년 미만)와

148)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 239.

149) 박성희,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제도,” 「북한뉴스레터」, 1997년 8월호, p. 10.

150)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p. 239~240.

거주(1년 이상 장기체류)로 구분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제3조 참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등록신청서를 내고 체류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나 사증을 첨부·제출하여야 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제5조).

그러나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들어 왔다가 들어 온 다음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돌아가는 외국인, 지대 내의 무역항에 들어온 외국선원, 다른 나라 고위급 대표단 성원, 북한주재 외국대표부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제7조). 외국인이 여관, 숙소, 초대소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숙박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여관, 숙소, 초대소는 외국인의 숙박정형을 출입국사업부서에 그 날로 통지해야 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제8조). 이러한 규정들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동정 및 거취에 대한 북한당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7일 내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수속을 해야 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제9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에 연장신청서를 출입국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제13조).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의 10배를 물어야 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제19조 3문). 이러한 규정들은 증명서류의 관리에 철저한 북한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⁵¹⁾

(2)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운영

외국기업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이 포함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제2조 및 제3조 참조).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법적 성격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설치된 현지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 「외국에 본기업(외국기업)을 두고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의 형식으로 진출하여 본기업의 업무를 위임처리하는 사무소」임을 알 수 있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 외국기업(본기업)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 받는 등의 위임대리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제5조). 즉 봉사활동은 기본업무이며 위임대리업무활동(委任代理業務活動)은 부수적 업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부수적 업무의 허용을 통해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가 사실상 본기업을 대리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신청, 승인절차, 금융거래, 위반시 벌과금 등에 대해 북한의 여타 법령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외국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원활

한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常駐期間)을 최대 3년까지라고 규정(「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제4조 1문 전단)하는 한편, 기간연장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희망시 상주기간 만료 3개월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신청만으로 자동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정원수는 5명을 넘을 수 없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정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들이 포함된다. 단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 등 행정기술 성원과 운전자, 정비원 등 봉사성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제4조 1문 후단 및 2문).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의 위임대리업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재수출을 말함)·위탁판매를 하거나 북한내의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목적의 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북한과 외국정부사이에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 협정이 정한 범위내의 활동이 가능하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제6조 1문 및 2문). 이러한 규정들은 외국기업에 대해 상주대표사무소의 구성원 수, 기능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는 설치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

에 지대당국에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면, 지대당국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登錄證)과 상주대표증(常駐代表證)을 발급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제13조 및 제14조). 그런데 이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매년 유효기간 만료 15일전에 지대당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제16조 1문 및 2문).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상주계속의 허가여부를 매년 재심사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렇게 북한당국이 매년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이나 남한기업으로서도 매우 번거로운 절차라고 할 것이다.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고, 관련규정 위반시 2천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위가 엄중할 경우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제28조 및 제29조)도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다.

요컨대 매년 상주허가 여부에 대한 재심사,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수시검열 허용이라든가 관련규정 위반시 추방의 제재는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¹⁵²⁾

152) 제성호·정인섭·서철원, 「북한원전건설 관련 법적 제문제 연구」(서울: 한국전력공사, 1996), pp. 149~154 참조.

다. 「대외경제계약법」 및 「대외민사관계법」의 문제조항

북한은 1995년 2월 22일 「대외경제계약법」을 제정하여 대외무역과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상업계약의 체결형식과 절차,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령의 기본골격을 갖추었다. 즉 종래에 외자유치법령과 민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되어 오던 대외경제계약의 체결절차와 방법,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계약 강제이행수단 등의 불명료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몇가지 문제점 내지 주의할 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대외경제계약법」 제16조는 “... 계약을 맺기전에 이루어진 합의서나 통신교환문서는 계약이 맺어진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식계약 체결전에 이루어지는 의향서나 기술이전 합의각서와 같은 예비적 합의사항이 계약체결시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 당사자와의 계약체결시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경제계약법」 제16조에서는 같은 당사자간에 상호 모순되는 2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즉 양자간의 효력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서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원회간에 이미 현실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외경제계약법」 제21조는 “...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셋째, 「대외경제계약법」 제41조에서는 “계약당사자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것을 제때에 막아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위험을 모두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공고하게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 1995년 9월 6일 제정된 법이다(「대외민사관계법」 제1조). 말하자면 대외경제개방 및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셈이다.

「대외민사관계법」의 문제점으로는 다음 두가지만 들기로 한다.

첫째, 「대외민사관계법」 제54조는 “입양, 파양, 부모와 자녀관계, 후견, 부양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사자들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쌍방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국제관례를 보면 일방 혹은 피고만이 법정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당사자들’이라는 것과 제53조의 ‘원고나 피고’라는 용어를 비

교하면 양 당사자가 모두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북한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외민사관계법」은 북한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규정일 뿐 외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컨대 「대외민사관계법」 제5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북한의 전속적 관할권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특히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대외민사관계법」 제60조에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법원의 관할권행사가 부당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든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제56조에서 당사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재판 또는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사유의 하나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 재판 또는 중재를 먼저 시작한 경우”를 들고 있어서 위에서 규정한 북한의 관할권행사 요건 중에 외국의 관할권행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¹⁵³⁾

153) 위의 책, pp. 251~253 참조.

IV. 종합적 평가 및 고려사항

1. 외자유치법령의 종합적 분석·평가

앞의 장에서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본장에서는 위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평가해 보기로 한다.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들은 대체로 ① 국제경쟁력의 결여, ② 일관성 및 명확성의 결여, ③ 실효성의 보장 불투명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가. 국제경쟁력의 결여

외자유치법령상의 국제경쟁력 결여는 북한당국이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필요한 외화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아울러 작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조항들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경쟁국에 비해 투자환경이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합영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중요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출석 이사의 2/3 찬성으로 이사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합작기업에 대한 투자상환과 이윤분배는 제품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합작기업의 경영은 북한측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다. 외국인기업에 있어서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출자평가액은 등록자본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합영·합작·단독투자 등의 구별없이 북한에서는 등록자본의 감자가 불가능하여 경영활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둘째, 외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노무관리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채용 및 해고에 있어서 인력알선기관과의 계약 내지 합의를 규정해 놓고 직업동맹조직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곤란한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을 기업이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채용시 당국과의 합의를 규정해 놓고 있고, 경쟁국보다는 월등히 높은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셋째, 외화관리와 금융업무와 관련해서는 북한원 계좌에는 공화국 영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북한원을 넣으나, 이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북한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이윤의 교환성 통화로의 태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종업원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임금 등 합법적 소득의 60%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은 북한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넷째, 토지관리에 있어서도 중국의 법령과 비교하여 불리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할 경우 토지임대기관의 우선구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기, 통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비를 토지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토지임대료에 포함시킴으로써 토지임대료의 과다책정이 예상되는 것이라든가, 임대기간이 만

료되어 토지이용권의 반환시 투자한 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북한의 외자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¹⁵⁴⁾

다섯째,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다른 경쟁국에 비해 외자유치에 불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의 국외소득 모두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거주외국인이 북한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가 적용되도록 한 것 등은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되는 문제조항이라고 하겠다.¹⁵⁵⁾

국제경쟁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상과 같은 조항들은 북한의 경제사정(특히 외화난)이 호전되거나 체제개혁적인 개방이 실시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분석된다.¹⁵⁶⁾

나. 일관성 및 명확성의 결여: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

전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들의 법령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이며,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는 구체성이 없고 불분명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한 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외자

154)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p. 225.

155)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문제점과 대책 -국내기업의 북한진출과 관련하여,” 「북한연구」, 제6권 1호 (1995), pp. 119~120.

156) 북한과 중국의 외자유치법령에 명시되고 있는 투자형태, 세제, 외화관리제도, 자유경제무역지대, 토지임대제도, 노무관리제도 등에 관한 상세한 비교는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pp. 218~227 참조.

유치법령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북한이 외자유치법령의 제정·운영경험이 다른 사회주의국가들보다 훨씬 일천하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면 대북투자의 대상업종과 관련하여 ‘~을 비롯한 여러 분야’라는 표현은 명확성·구체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예이다. 또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9조 5호)와 같이 기업설립 승인 불허사유가 분명치 않아 남한기업과 외국투자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기업의 영업중지나 기업해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8조는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반행위의 엄중성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승인기관(대의경제기관과 지대당국)에 달려 있어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토지임대법시행규정」 제86조 및 제92조에서는 토지의 기준 임대료와 사용료를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기준임대료와 사용료 책정기준이 분명치 않다.¹⁵⁷⁾

이 같은 불명료하고 구체성을 결여한 조항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소지가 높다. 이러한 조항들은 특히 남한기업이 나진·선봉지역에 100% 단독출자하는 경우 우리측에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¹⁵⁸⁾

157)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문제점과 대책 -국내기업의 북한진출과 관련하여,” pp. 118~119 참조.

158) 법령의 자의적 해석·적용은 첫째, 법령의 투명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

그러나 최근 제정되고 있는 외자유치법령들에서는 과거에 비해 투명성과 구체성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법령의 정비 부족이나 법령제정의 경험미숙 등으로 부터 파생된 자의성(恣意性)의 문제는 시간에 감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법령의 불명확성 및 구체성의 결여는 언제나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자유치법령의 적용시 융통성 내지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는 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 실효성 보장 불투명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 규정된 조항만을 가지고 북한의 투자환경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힘든 면이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조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우선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기인하고 있다.

합영기업의 노동력 우선보장 조항이나 합영기업의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합영기업의 종업원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과거의 합영경험이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외국투자자는 합법적 기업이윤이나 소득금, 그리고 청산자금은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외화관리법」상의 규정은 북한의 극심한 외화부족을 고려할 때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출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윤송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관, 기업소는 합영수

나, 둘째,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모순을 비롯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셋째, 관련 법령의 정비가 부족하거나, 넷째, 법령의 해석과 적용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다.

출계획에 예견된 물자는 우선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북한의 심각한 물자불족현상을 고려할 때 필요물자의 적기(適期) 조달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합영법」, 「합작법」 등에 제3국 기술자 및 기능공의 채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체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필요인력의 채용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영기업 종업원들의 해외출장을 북한당국은 제 때에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경영비밀은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 협의없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법령조항도 얼마나 잘 지켜질 지도 미지수이다.¹⁵⁹⁾ 외자유치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조항들은 외국투자기업에 비해 남한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 남북경협시 고려사항

가. 북한진출시 기업의 고려사항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공사를 하거나 개발에 참여할 경우 그것은 남북합작투자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과 몇가지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때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온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계약에서 가능한 법적 보호방안을 강구

159) 裴鍾烈, “北韓 外資法의 문제점과 대책 -국내기업의 북한진출과 관련하여,” pp. 120~123 참조.

하여 자세히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¹⁶⁰⁾ 이하에서는 남북경협시 기업이 고려하거나 점검해야 할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만 지적하기로 한다.

(1) 기업설립 및 출자시 고려사항

합영 및 합작기업의 경우 대체로 북한측 파트너가 맡아서 설립절차를 밟는다. 그에 비해 자유경제무역지대 내 단독투자의 경우 우리 기업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해당기관이나 우리 기업이 선정한 북한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¹⁶¹⁾ 결국 합영 및 합작기업 설립절차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측 당사자가 합영 또는 합작기업 설립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실제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이 「합영법」이나 「합작법」을 개정하여 남한측 투자가가 직접 기업창설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북한 당국이 단기간내에 우리측의 법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줄지 의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기업이 북한측 당사자와 체결하는 합영계약이나 합작계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한기업이 북한원과 원료, 자재를 출자하여 북한측 당사자와 합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러한 출자는 조업 후 한 회전분의 유통 및 생산에 쓸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32조 참조). 따라서 우리 기업은 한 회전분의 개념을 사전에

160) 이에 관해서는 張孝相, “法的 妥當性의 측면에서 본 南北經濟交流와 協力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35권 1호 (1990), pp. 34~47 참조.

1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pp. 34~35 참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외자유치법령에서는 현물재산이나 재산권으로 출자하는 경우 신제품 및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현물출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선진 자본재나 고급의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기업이 중고설비를 북한에 이전하는 방식의 투자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은 해당 설비가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합격선을 넘어서는 것인지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 북한법하에서 출자하는 재산에 대한 신뢰성있는 가격평가제도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즉 현물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발명권이나 기술비결 등 무형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무형재산의 평가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한 출자재산 평가제도가 단시일내에 정착될지도 의문이다. 결국 출자재산의 가격평가는 대북투자에 나서는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운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출자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북한측 당사자 및 관련 당국자를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¹⁶²⁾ 아울러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들은 출자재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 제3자에 평가를 위임하는 방안을 합영 및 합작 계약에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

(2) 경영 및 노무관리에 관한 점검사항

「합작법」은 이윤분배나 상환을 생산제품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

162) 김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제도,” p. 16.

어 사실상 외국투자가측이 그 판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점은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제품의 판로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측 당사자와 합작계약을 체결해야 투자로 인한 불측(不測)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합영기업의 생산제품 판매에 대하여 국가가 정해진 기관, 기업소에 북한원을 받고 팔 수 있으나, '판매대금은 노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북한화폐로 받은 판매대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수판매시에도 여러 가지 법·제도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서는 수출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정책도 미비한 형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은 내수시장 협소,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남한기업은 수출을 목표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산 제품의 대미(對美) 수출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⁶³⁾

한편 북한측은 직접 또는 직업동맹조직을 내세워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출자기업의 노무관리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의 종업원들이 누리게 될 상대적 혜택들(물질적 인센티브 및 국가사업 미동원 등)이 북한 국내기업 노동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해 북한측이 대북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에 대해 간섭 및

163) 정원준, "북한투자유치 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p. 9. 현재 북한은 미국의 「대적국 통상규제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따라 적성국으로 분류되어 북한산 제품의 미국시장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미국의 통상법과 수출관리법 등에 의한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북한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白珍鉉, “南北經濟協和 美國의 對北韓 通商規制” 『統 一問題研究』, 제4권 2호 (1992), pp. 264~283 참조

통제를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만반의 대비책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예컨대 이사회 결의나 기업대표의 동의서 제출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의가 없이는 북한노동력을 임의로 동원할 수 없다는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5조나 「합영법 시행규정」 제90조의 내용을 합작투자 계약서에 꼼꼼하게 명기하여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외화 및 토지이용시 고려사항

남한기업은 「외화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북한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소득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자본을 제한 없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6조에서는 북한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북한원은 「조선원돈자리」에 예금하며, 「조선원돈자리」의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영역 안에서 취득한 북한화폐는 외화로 교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외화로 얻은 이윤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외송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은 합법적 수입 및 자기자본에 대한 북한원의 교환성 통화로의 태환을 보장받지 않으면 「외화관리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북한영역 밖으로 송금하지 못함으로써 대북투자로 인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남한기업은 이윤의 송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북한경제의 후퇴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른 대외교역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실물경제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북한의 무역환율이 국제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구매가치 또는 시장교환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개방이 진행된다면 중국과 같이 외환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산평가, 회계처리

및 결산, 외환송금 등에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환율변동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당국이 토지임대료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료의 표준화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 기준의 설정 및 토지임대제도의 보완·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도 중국에 진출한 합영·합자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1986년에 표준토지사용료를 정하여 토지임대료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배제한 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¹⁶⁴⁾

(4) 보험가입 및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대비

전술한 바와 같이 본래 북한영역 내의 물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실정을 들여다 보면 물건의 성격에 따라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보험가입주체가 결정되고 있어 현재에도 남북한간에 제한적이지만 보험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조에서 「원칙적으로」 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문구에 비추어 북한보험 이외의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틈새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향후 북한에 진출하더라도 북한보험 이외에 남한이나 제3국의 공신력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64) 全洪澤, 「북한의 外國人投資法制」, p. 9.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도 북한에 민영보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수요도 극히 저조한 상황이므로 보험업의 북한진출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사형태로 진출하여 영업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남한기업이 북한의 보험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에서는 상주대표부로 금융기관도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합영·합작 또는 단독투자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할 경우 남한 기업의 발명특허나 기술·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특히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남한기업들이 합작투자계약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합작투자계약에서 우리 기업들은 한국기업의 특허·기술·상표 등이 최소한 북한의 현행제도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⁶⁵⁾ 이후 산업재산권의 보호가 남한에서 보호받는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점검

외자유치법령의 분쟁해결조항은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국의 중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의 경우 「외국인투자법」, 「합영법」과 달리 분쟁

165) 諸成鎬,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 25권 2호 (1992), p. 204.

시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남북합작기업은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을 근거로 내세워 기업 설립당시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규정을 확인받도록 하거나 또는 남한단독출자기업(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이 북한기업과의 거래시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분쟁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3국에서 중재가 실현된다고 해도 북한의 재판소가 주권면제를 주장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집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우리 기업은 계약서에서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약속받는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을 삽입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기타

현대그룹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간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북한측은 현대그룹과 상호 모순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전의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즉 1998년 10월 29일 양측간에 체결된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관광사업 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 등 일련의 계약서 및 합의서는 관광대상지역, 사업의 범위, 권리내용, 대가, 분쟁해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년 8월과 9월에 체결된 종전의 기본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와 관련 합의서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전의 계약과 모순·상충되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남한측에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무리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향후 대북투자 등 남북경협 본격화시를 내다볼 때 남한기업은 이

리한 점을 깊이 유념하여 빈틈없는 완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북한측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는 임의로 기 체결한 계약을 파기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함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북투자 및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항상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남북한간의 계약체결관행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나.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

(1)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의 체결

「외국인투자법」이 원칙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국유화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충분하게 보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유화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북투자의 보호 차원에서 남북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투자보호의 대상, 국유화의 사유(불가피한 사정), 보상의 범위와 방법, 보상절차, 대위변제권(代位辨濟權)의 행사 등 대북투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¹⁶⁶⁾

166) 다만 한가지 유의할 것은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 국유화 금지의 예외를 명시할 경우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으로 북한의 국유화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어 동 협정의 국유화 금지조항의 효과를 퇴색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국유화 금지만을 명시하고, 이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될 투자계약, 특히 북한당국과 한국기업간의 투자계약에서

일반국제법상 국유화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고, 외국기업들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을 지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북한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국인투자법」의 보상규정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경우 「외국인투자법」상 「해당한 보상」의 의미를 명백히 해두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¹⁶⁷⁾ 이와 함께 남북한의 기업들간에 투자계약을 맺을 경우 여기에서 보상액은 국유화되는 재산이 갖는 국제시가의 최소한 몇 %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국유화와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가격·국제기준에 맞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대북투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통상의 국유화 외에도 이른바 잠식적(蠶食的) 또는 위장 국유화(*creeping or disguised nationalization*)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위장국유화란 중과세와 주식의 강제

국유화 내지 수용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제한적(명라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이든 불가피한 사정의 열거가 예시적 열거로 해석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167) 1992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동북아원탁회의(The Northeast Asia Round-table: NEAR)에 북한측이 제출한 「외국인투자법」의 비공식 영문번역본에서는 「해당한 보상」을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 영어로 *corresponding compensatio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편 미연방 대외방송정보국(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 FBIS)에서 발행되는 지역별 자료에는 이 「해당한 보상」을 *fair compens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 *Northeast Asia*, FBIS-EAS-92-203, 20 October, 1992, p. 15.

매각 등의 조치와 같이 위장전술을 동원하여 사실상 수용과 국유화에 상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유사조치를 말한다.¹⁶⁸⁾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과의 세금협정이 동 세금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7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적용범위에 ‘공화국 영역내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영역밖 거주 조선동포’(제6조)도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이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서도 규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한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의 세금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것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7조). 따라서 만일 남북한간의 합의를 국가간의 협정으로 볼 경우 동 협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나, 만약 협정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간에 조세와 관련한 보다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야기될 수 있다. 자의적 적용가능성이 큰 북한의 세금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되, 반드시 동 협정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등 국제조약의 보호수준에 맞게 남북

168) 이 문제에 관해서는 Marin Domke, "Foreign Nationalization: Some Aspec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Selected Readings on Protection by Law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s* (New York: Matthew Bender & Co., 1973), p. 310; Earl Snyder, "Protection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Examination and Appraisal,"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0(1961), p. 472 참조.

한이 상대방의 기업이 갖고 있는 발명특허·상표·기술을 보호해 주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남한이 본격적인 대북투자에 앞서 남북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협정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북한이 필요한 국내입법조치를 취한 후에 우리 기업들이 북한기업들과 본격적으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구체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대북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증 및 손실보전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종합적인 투자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 4호에서 남북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보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에는 「수출보험법」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보험공사의 관련보험에 가입하여 신용위험과 송금위험을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대북투자 보호를 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마저도 아직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많은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수출보험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의 추가적인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북한에 지출한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에 의한 손실보조는 북한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비사업적 위험에 대해서 이루어지

고, 경영상·사업상의 위험은 기업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¹⁶⁹⁾

그러나 수출보험에 의한 보호는 신용위험과 송금위험 등과 같은 최소한의 보험대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남한기업의 완전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위험보장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적·물적 교류에 따르는 위험 보장과 북한진출기업의 생산활동 보장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북한의 보험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은행법」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보험회사와 함께 남한의 보험회사가 북한에 직접 진출하여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실무적인 법률을 제정하도록 북한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¹⁷⁰⁾

(3) 표준정형계약서 마련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북한측 당사자와 체결하는 합영 내지 합작계약은 선례로 남아 후발기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기측에 유리한 표준정형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북한의 표준정형계약서와 실제로 외국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주로 합영계약서)들을 입수하여 이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동협력하여 우리측의 표준정형계약서

169) 諸成鎬, 「對北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pp. 136~147 참조.

170) 신동호·안철경·조혜원, 「남북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독일모델을 중심으로-」, pp. 108~109 참조.

와 표준기업규약(또는 정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북한은 중국 등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법체계와 법운용의 실제에 큰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협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 및 실제적인 법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4)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개선요청

남한기업이 북한에서 북한측 당사자와 합영, 합작 등의 방법으로 공동개발 내지 협력사업을 하거나 단독투자의 방식으로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진출할 경우 사업의 주체는 현지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북한법의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투자환경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① 기업의 출자금액 감액불가, ② 의사결정 방식의 엄격성, ③ 직원의 채용·해고시 북한노동행정기관의 허가 등 노무관리의 경직성, ④ 사장 및 부사장 선임방법의 불확실, ⑤ 현물자산, 발명권 등 화폐 이외의 출자대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의 불분명, ⑥ 기준임대료와 사용료 책정의 불명확, ⑦ 외화거래의 경직성 및 제한성, ⑧ 분쟁해결방법의 제한 ⑨ 외국투자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미흡, ⑩ 기술도입 관련 법령 부재, ⑪ 기업파산에 관한 법령(「외국인기업법」 제30조 참조)의 미제정 등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남한기업이 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에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확성, 구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소한 외자유치법령이 중국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

한에 촉구해야 한다.¹⁷¹⁾ 이는 북한이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당국의 자존심을 고려할 때 이미 제정된 법령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에 대해 문제조항의 개정·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우선적으로 손질이 예상되는 법령부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계관련규정, 중재관련규정, 기술도입관련규정, 임대료와 사용료의 표준화, 장려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등에 관해 북한측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해 주도록 설득해야 한다.¹⁷²⁾ 아울러 중·대만의 경우에서 보듯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 북한당국이 투자촉진을 위한 우대조치를 마련해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¹⁷³⁾

(5) 북한에서 활동하는 남한 근로자의 보호

한국인 근로자가 북한에 진출할 경우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때 북한지역내에서 남북한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 가능성과 그로 인한 남북한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을 배제하기 위해 ILO의 노동관계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북한의 ILO가입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근로자의

171)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개선요청방향에 대해서는 全洪澤, 「북한의 外國人投資法制」, p. 61;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pp. 231~232;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p. 54;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문제점과 대책 -국내기업의 북한진출과 관련하여,” pp. 121~123.

172) 위의 논문, p. 124.

173) 중국의 「대만동포의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은 대만동포를 합영당사자로 명시하고 이들에 의한 투자를 장려·우대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 보호, 주거 및 통신의 불가침 등 기본적 인권의 제약이나 활동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요구해야 한다.¹⁷⁴⁾

(6) 대북투자 안내·조정

「국민의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기초하에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대북투자 등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경분리가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과 타당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북한진출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기업들간의 과열 경쟁, 북한측에 대한 과도한 금품제공(뒷돈거래), 대북사업의 지나친 홍보나 과대포장 등의 행태도 바람직한 남북경협 질서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시 적절한 안내 및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¹⁷⁵⁾ 정부가 이에 관한 세부안내지침을 마련하여 기업들을 계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74) 諸成鎬,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pp. 201~202 참조.

175) 이와 관련,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이 실시되고 있고 기업의 자율판단이 증시되는 현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남북교역과 대북투자를 추진할 때 유념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그것들은 첫째,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둘째, 기술적인 문제부터 북한측과 교섭할 것, 셋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넷째, 기업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 다섯째, 이미지 제고나 경쟁기업을 의식하여 ‘한건 터뜨리기’식 남북경협 추진은 삼가면서 가능한 한 정부와 협조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할 것 등이다. 「연합통신속보」, 1998년 12월 16일자 참조.

(7) 정보의 제공

남한기업이 북한측과 합영하기 위해서는 북한측 파트너가 북한내에서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승인기관과의 견조율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측 당사자의 사업규모와 실적, 북한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특히 합영가능성의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북한에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그 동안 직접 지득하거나 또는 먼저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은 북한관련 경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남한이나 외국의 기업들이 북한의 투자환경을 평가할 때 북한의 대외 채무와 낮은 신용도, 시장경제체제의 미정착, 내수시장의 협소, 대외개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외자유치법령 정비의 내용과 폭, 수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제정하고 있는 일련의 외자유치법령은 북한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관계국 정부와 국내외의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은 현재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고, 투명성도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도 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자의적 해석·적용의 위험이 있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점은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조하에 역할 분담을 하여 법제적 측면에서의 대북투자의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우리 기업들은 대북투자 등 남북경협을 추진할 때 합작투자 계약의 체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목상 호혜평등의 원칙만을 명기하고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계약은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자의적 적용의 여지가 있는 불분명한 용어의 사용은 피하고,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분명히 규정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대북투자 초기에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체결하는 계약유형은 앞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대북투자계약의 준거계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 기준과 수준에 걸맞는 충실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북한당국자들이 기업 마인드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익숙해지도록 깨우쳐야 한다. 아울러 북한 내부정세의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은 물론 관련 외자유치법령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업차원에서 스스로 투자보호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한간에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면 점차 산업재산권 보호나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은 대만동포의 대중 투자시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외국투자기업에 비해 남한기업을 우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제정된 법령의 개정을 북한측에 요구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관하여 우대조치를 포함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북한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에서 초기 대북진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불완전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남북간 표준합작투자계약서 체결지침」을 제정하여 기업들을 계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북

한 외자유치법령의 신규제정, 개폐를 포함한 대북투자환경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북한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과열경쟁이나 지나친 홍보, 과도한 대북 금품 제공 등 무질서한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남북경협 질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單行本

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國際民間經濟協議會. 「中國投資實務」. 서울: 國際民間經濟協議會, 1990.

—————. 「對中國 投資戰略과 實務」. 서울: 國際民間經濟協議會, 1991.

金日成·金正日. 「社會主義法務生活について」. 東京: チニチエ思想國際研究所, 198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중재법」. 법학부용.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년대미상.

金贊鎭. 「外資導入論」. 서울: 日潮閣, 1976.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연구보고서 95-15.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증보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베트남편람: 증보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무공자료 95-48.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및 관련 법규」. 무공자료 96-47.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6.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

- 교 法學博士學位論文, 1991.
-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법원행정처, 1995.
-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서울: 法制處, 1992.
- 北韓研究所. 「北韓總覽(1945~1982)」.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 「북한의 민사소송법 개요」. 서울: 북한연구소, 1992.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현대조선말 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三星經濟研究所. 「1992년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서울: 三星經濟研究所, 1992.
- 삼성경제연구소. 「베트남」.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4.
- 徐憲濟. 「通商問題와 法」. 서울: 栗谷出版社, 1994.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신동호·안철경·조혜원. 「南北經協 增大 및 統一에 對備한 保險産業 對應方案 研究 -독일모델을 중심으로-」. 서울: 보험개발원, 1997.
- 申雄湜·安成祚.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법규-」.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8.
- 李仲範. 「外資國有化論」. 서울: 一潮閣, 1975.
- 張孝相. 「國際經濟法」. 서울: 博英社, 1986.
- . 「中·蘇·東歐 進出企業의 國際契約」. 서울: 韓國經濟新聞社, 1988.
- 全洪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北韓經濟研究센터 研究資料 93-05.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3.
- 全洪澤·吳剛秀.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와 對北投資 推進方案」. 서울:

- 韓國開發研究院, 1995.
-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統一情勢分析 92-07.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 「對北投資 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연구보고서 93-09.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 제성호·정인섭·서철원. 「북한원전건설 관련 법적 제문제 연구」. 서울: 한국전력공사, 199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5.9.
- 최수영 외. 「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 統一情勢分析 98-0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최수웅.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최종고. 「北韓法」. 서울: 博英社, 1993.
- 崔周煥. 「北韓經濟論」. 서울: 大旺社, 1992.
- 統一院. 「'92 北韓概要」. 서울: 統一院, 1992.
- 한국무역협회. 「問答式 中國投資案內」. 국제 90-20.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0.12.
- . 「대중국교역 및 투자안내」.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4.8.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법제분석 94-1.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 「北韓의 貿易 및 外國人投資制度」. 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91.
- .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서울:

- 韓國輸出入銀行, 1991.
- 韓國外換銀行. 「北韓의 合作投資 및 外國換管理制度」. 서울: 韓國外換銀行, 1991.
-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 1992.
- 佐藤和男. 「國際投資의 法的保護」. 東京: アシ"ア經濟研究所, 1968.
- 櫻井雅夫. 「國際投資法」. 東京: 有信堂, 1988.
- Baotai, Chu.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 Question and Answer Guide*. Hongkong: University Publisher & Printer, 1987.
- Foster-Carter, Aida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 Jackson, J. H. and W. J. Davey.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 Kronfol, Zouhair A.,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A Study of International Law*. Leiden: Sijthoff, 1972.
- Nwogugu, E. I., *The Legal Problems of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Manchester Univ. Press, 1967.
- Schwarzenberger, Georg. *Foreign Investments and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and Sons, 1969.
- White, Gillian.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London: Stevens and Sons, 1961.
- Wortley, B. A., *Expropriation in Public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2. 論文

- 權五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 「북한연구」. 제4권 4호 (1993).
- 金淳培. “외국인투자법령의 제정.” 「통일」. 통권 제135호 (1992년 12월).
- 김영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의 규제내용과 특징.” 「사회과학」. 제6호.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5.
-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최근 6개 外國人投資關聯 法 制定을 中心으로.” 「主要國際問題分析」. (外交安保研究院, 1993.4.28).
- 김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제도.” 「북한뉴스레터」. 1996년 2월호.
- 김재교. “새로운 자재공급체계하에서 계약제도의 특성과 그 역할.”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론문집)」.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4.
- 동용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 법규 정비의 배경 및 의미.” 「世界經濟」(三星經濟研究所). 제41호 (1992.10.25).
- 방계문. “공화국 법은 우리 당 정책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론문집)」.
- 박성희.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제도.” 「북한뉴스레터」. 1997년 8월호.
- . “북한의 외화관리제도.” 「북한뉴스레터」. 1996년 10월호.
-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3호 (1993. 3).
- . “北韓의 合營法施行細則 改正과 우리의 對應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5호 (1993.5).
- . “北韓 外資法令의 문제점과 대책 -국내기업의 북한진출과 관

- 런하여.” 「북한연구」, 제6권 1호 (1995).
-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北韓法制資料 제2호. 서울: 법제처, 1992.
- 보험감독원. 「북한 보험제도」. 서울: 보험감독원, 1997.
- 申東秀. “북한합영법의 종합적 비판.” 「통일한국」, 통권 제12호 (1984년 12월).
- 안재건. “중국투자 백문백답.” 「북방통상정보」, 통권 제94호 (1993.8).
- 오길남.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北韓」, 통권 제252호 (1992년 12월).
- 유임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협력방안.”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제과제」. 서울: 건국대학교 현대이념비교연구회, 1993.6.
- 李東馥. “남북대화: 1993년의 전망.” 「새시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서울: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1992.
- 李英俊. “北韓의 財産法研究.” 「北韓의 法과 法理論」.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 李幸浩. “羅津-先鋒經濟貿易地帶の開發とその特徴.” *ERINA REPORT*, vol. 24 (1998年 8月號).
- 張孝相. “國際契約의 模型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제34권 제1호 (1989).
- . “法的 妥當性的 측면에서 본 남북한 經濟交流와 協力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35권 제1호 (1990).
- 全洪澤·曹東昊. “남북한 투자협력의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남북한 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개발 계획」.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992.6.12..
- 정원준. “북한투자유치법규의 문제점 분석 -실무상 문제 및 대응방안 위주로-.” 「북한뉴스레터」, 1998년 11월호.

- 諸成鎬. “南北 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1992).
- . “通商법에 비추어 본 南北經濟交流.” 國際去來法學會 發表文 (1993. 4. 12).
- . “북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전략』. 서울: 통일원, 1993.
- 조은호. “북한의 보험제도.” 『북한뉴스레터』. 1997년 4월호.
- 崔壽永.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統一研究論叢』. 제3권 1호 (1994).
- Adede, A. O. “A Profile of Trends in the State Contracts for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between African Countries and Foreign Companies.”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12 (1980).
- Buzescu, Petru. “Joint-Ventures in Eastern Europe.”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2 (1984).
- Bowett, D. W. “Contemporary Development in Legal Techniques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cueil des Cours*. Tome 180 (1983-II).
- Domke, Marin. “Foreign Nationalization: Some Aspec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Selected Readings on Protection by Law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s* New York: Matthew Bender & Co., 1973.
- Snyder, Earl. “Protection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Examination and Appraisal.”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0 (1961).

Trooboff, P. D. and C. A. Goldstein.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Experience to Date in the U.S. Court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1977).

3. 기타

内外通信.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
불구, 투자수용한계 드러내." 제818호 (1992. 10. 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나진·선봉지대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1998년 7월말 현재-" 「북한뉴스레터」. 1998년 10월.

—————. 「북방통상정보」. 1994년 2월호.

통일원 교육홍보국.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 分析·評價." 「統一速
報」. 제92-11호 (1992.12.28).

統一院 情報分析室. 「週間 北韓動向」. 제95호 ('92.10.18~10.24).

統一院. 「月刊 北韓動向」. 統分 92-12-59. 서울: 통일원, 1992.

통일부 정보분석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결과」.
서울: 통일부, 1998.9.6.

한국은행. 「1997년 북한 GDP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1998.6.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 *Northeast Asia*.
FBIS-EAS-92-203, 20 October. 1992.

Institutional Investor (March, 1992).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채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의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계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박배신 조한범	영정상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호호진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著 7,000원
-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共著 6,500원
-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著 4,500원
-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著 6,500원
-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著 4,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 A 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